



함께 살피고, 함께 보호하는
2026년
수원형 아동보호체계구축
정책토론회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의 현재와 미래

일 시 : 2026년 7월 10일(금), 14:00 ~ 16:00

장 소 : 더함파크 대강의실 (1층)



수원특례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함께 살피고, 함께 보호하는
2026년
수원형 아동보호체계구축
정책토론회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의 현재와 미래



수원특례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함께 살피고, 함께 보호하는 2026년 수원형 아동보호체계구축 정책토론회

- 주 제 : ‘2026년 **함께 살피고 함께 보호하는** 수원형 아동보호체계구축’
-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의 현재와 미래 -
- 일 시 : 2026년 7월 10일(금), 14:00 ~ 16:00
- 장 소 : 더함파크 대강의실 (1층)
- 대 상 : 수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유관기관 등
- 주 최 : 수원시
- 주 관 : 수원시정연구원·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 세부 일정

소요시간 (분)	내 용	비고
13:30~14:00 (‘30)	▶ 접수 및 등록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14:00~14:10 (‘10)	▶ 내빈 소개 ▶ 개 회 사 : 김성진 원장 (수원시정연구원)	사회 한연주 연구위원 (수원시정연구원)
14:10~14:30 (‘20)	▶ (발제1)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이후,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개선과제	김경희 교수 (가톨릭꽃동네대학교)
14:30~14:50 (‘20)	▶ (발제2) 데이터로 본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와 시민인식	서동미 전문연구위원 (수원시정연구원)
14:50~15:40 (‘50)	▶ (토론1)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의 현재와 고도화 과제 - 황원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원시 아동돌봄과) ▶ (토론2) 경찰 입장에서 본 아동학대 공동대응 발전 방안 - 배명현 경장 (수원팔달경찰서) ▶ (토론3) 지역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현황과 과제 - 김수현 팀장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 (토론4)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정현석 관장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토론5) 특수육구 아동학대 사례관리 협업 현황과 발전방안 - 임채은 팀장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좌장 김경희 교수 (가톨릭꽃동네대학교)
15:40~16:00 (‘20)	▶ 질의 응답 및 폐회	



CONTENTS

발제 ①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이후,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개선과제 .. 1

김경희 교수(가톨릭꽃동네대학교)

발제 ②

데이터로 본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와 시민인식 13

서동미 전문연구위원(수원시정연구원)

토론문

①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의 현재와 고도화 과제 · 39

황원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원시 아동돌봄과)

② 경찰 입장에서 본 아동학대 공동대응 발전 방안 42

배명현 경장 (수원팔달경찰서)

③ 지역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현황과 과제 44

김수현 팀장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④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49

정현석 관장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⑤ 특수육구 아동학대 사례관리 협업 현황과 발전방안 54

임채은 팀장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함께 살피고, 함께 보호하는
2026년 수원형 아동보호체계구축 정책토론회

발제 ①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이후,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개선과제

김경희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

발제 ①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이후,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개선과제

김경희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

2026년 수원형 **함께** 살피고 **함께** 보호하는 아동보호체계 구축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이후,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개선과제

발표
정책토론회

날짜
2026. 07. 10

발표자
김경희 교수(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NALYTICAL FRAMEWORK

평가의 분석 축: 유니세프 아동보호체계 진단 영역

"공공화 이후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를 어떤 관점에서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UNICEF(2021)의 7대 시스템 영역을 평가지표이자, 향후 개선 방향을 설계하는 핵심 준거로 활용

01 법·정책 프레임워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과
국가 책임 명시

02 대응체계 운영
지자체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상시 소통체계와
정기점검, 아동의 목소리 경청,
옹호의 여부

03 서비스의 연속성
사례 진입부터 종결까지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연속성

04 최소기준과 감독
아동보호서비스의 정기적 점검과
평가장치, 피드백 반영 통한
서비스 개선 여부

05 인적·재정 자원
지속가능한 전담 인력
확보 및 예산 구조화

06 아동·지역사회 참여
아동 등 서비스 당사자로부터의
피드백을 받고 응답하는
공식 체계

07 정보수집·모니터링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위기에측과 평가,
정보시스템과 성과지표의 관리

PART 1

공공화의 성과와 기반 과제

공공화가 가져온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기반 과제를 함께 점검합니다.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이후,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개선과제

03 / 15

공공화 이후, 현장이 체감한 변화

아동학대 대응의 사법·행정적 패러다임 전환과 핵심 성과

민간 의존에서 벗어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수행 체계** 구축
아동보호체계의 기반 마련

01

국가 책임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

- 아동학대 대응이 민간 중심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 수행 체계로 전환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 책임성 확대
- 위기가동 발굴, 조사, 보호계획 수립 등 공공 중심의 대응 기반 마련

02

조사 공공성 및 경찰 협력 강화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담당하면서 행정적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짐
- 경찰과의 동행출동, 현장 안전 확보, 수사 연계가 강화되며 초기 대응의 신속성 향상
- 현장 판단이 민간기관 단독 부담에서 공공-경찰 협력 구조로 전환

03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족지원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사 기능에서 벗어나 심층사례관리와 가족기능 회복 지원에 집중
- 부모교육, 가족상담, 방문형 가족지원, 재학대 예방 프로그램 등 치료적·회복적 개입 확대
- 분리보호 이후 원가정 복귀와 가족재결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전문화 필요성 증대

04

다기관 협력과 지역 인프라 확대

-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학교, 쉼터 등 협력 기반 확대
-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 심리치료, 의료·정신건강 연계 등 보호 인프라의 촘촘화
- 장애, 중독, 정신건강 등 복합위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 연계 필요성 강화

공공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누가 조사하는가’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조사-보호-가족지원-지역협력의 기능이 보다 분화되고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이후,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개선과제

04 / 17

• FOUNDATIONAL CHALLENGES

공공화 이후, 성과와 함께 남아 있는 기반 과제 (사람, 전문성, 지속적 협력)

사람 전문성 축적의 한계

- ① 전문인력 지속가능성 부족
 - 순환보직과 잦은 인사이동, 신규 인력 중심의 반복으로 사례 경험과 실무 노하우가 조직에 축적되지 못함
- ② 중간관리급 전문인력의 이탈
 - 높은 업무강도와 소진(Burnout)으로 숙련된 실무자와 이탈 증가
 - 슈퍼비전과 후배 양성 기능 약화, 조직의 전문성 유지 어려움
- ③ 전문성 축적 부족
 - 기관 간 협력은 확대되었지만 담당자 교체가 잦아 신뢰관계와 협업 경험이 지속되지 못함
 - 사례 경험과 전문지식이 조직의 자산으로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
- ④ 공공성과 전문적 판단의 균형
 - 절차적 책임성과 행정적 부담은 강화되었으나
 - 복합사례에서는 전문적 재량과 현장 중심 판단 발휘하기 어려움

주요 현안: 지속가능한 전문인력과 전문성 구축

시스템 지역 간 운영기반의 격차

- ① 보호서비스 인프라의 지역 편차
 - 센터, 심리치료, 의료, 장애지원 등 보호 인프라의 지역 간 차이
 - 조사 이후 연계 가능한 서비스 수준에도 편차 존재
- ② 협력체계의 개인 의존성
 -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담당자 교체에 따라 협력 수준의 차이
 - 개인의 경험과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협력체계의 제도와 필요
- ③ 조사 이후 서비스 연계 편차
 - 조사 이후 사례관리, 치료, 가족지원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연계 강화 필요
 - 아동의 안전과 회복까지 고려하는 장기적 보호체계(Permanency) 확대 필요
- ④ 보호성과 관리 부족
 - 신고와 조사, 서비스 제공 횟수 등 숫자 중심 관리 실적
 - 아동의 안전, 회복, 가족기능 변화 등을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 필요

주요 현안: 지역 간 보호역량의 균형과 협력체계의 고도화

공공화 이후, 보호의 질을 높일 시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전문성이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고 조직 안에 축적되는 체계
- 협력이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체계
- 모든 의사결정이 아동 중심과 아동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는 체계

PART 2

보호체계의 발전방향과 과제

UNICEF의 아동보호체계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보호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이후,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개선과제

07 / 17

PART 2

공공화 이후 보호체계의 다음 과제

공공화 이후에는
아동 개별적 특성과 환경에 작동하는
실질적 아동보호의 질 고도화 **"보호체계의 고도화"**

- 1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보호체계 수립**
발달 특성과 의사표현 한계를 고려한 맞춤형 보호체계 필요
- 2 복합 고난도 사례의 경우 장기적 보호계획 (Permanency) 강화**
일시적 보호를 넘어 안정적 성장과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장기적 보호계획 강화
- 3 다학제 협력과 전문적 의사결정**
복합적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기관이 함께 판단하고 협력하는 체계 확대
- 4 특수욕구 아동보호체계 강화**
장애, 만성질환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 5 전문적 판단을 지원하는 제도 기반**
현장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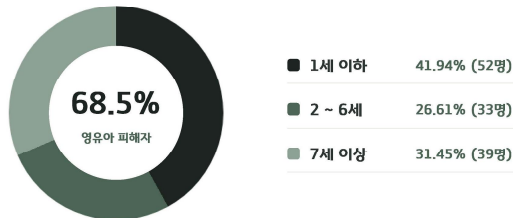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이후,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개선과제

08 / 17

• SERIOUS CASE EVIDENCE

영유아 보호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이유

사망 아동에 대한 영유아 집중 현상 (0~6세 아동 대상)



! 중대사건 피해아동 전체의 68.5%가 영유아층에 집중

연도별 추이: 2022년 50명, 2023년 44명, 2024년 30명 (3년간 총 124명 사망 사례)

영유아 보호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시사점

영유아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

자기 보호력이 부족한 영유아 학대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일반 대응과 별도로 영유아 밀착 지식과 개입 역량과 기반을 갖춘 대응전략 필요

다학제 기반의 전문적 의사결정

복잡한 사례, 의료적 방입 등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아동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진, 학교, 사법부 등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다학제 지원체계가 필요

• POLICY TASK 01

영유아는 왜 다른 보호전략이 필요한가?

정책 방향성 및 보완점

"최근 중대사건 분석은 영유아의 경우, 현재의 일반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되기 어려운 집단임을 보여줌"

-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움
- 따라서 발달단계와 개별 특성에 맞게 보호하는 맞춤형 전략 구성이 중요

똑같은 보호체계가 아니라 발달단계에 맞는 보호체계 필요

1

조기 발견체계 강화

건강검진, 보육, 의료 등과 연계한 조기 발견체계 중요

2

발달단계를 고려한 보호환경 조성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돌봄과 보호 환경 마련

3

초기 개입과 지속 모니터링 강화

영유아는 위험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초기 개입과 지속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

• POLICY TASK 02

서비스 연속성을 장기적 보호계획(Permanency)으로 확장

사건 해결을 넘어, 아동의 삶의 안정성을 목표로

현행: 단기 대응 중심 보호의 한계

사건은 종료되지만, 아동의 삶은 지속됨

아동중심 보호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삶을 연결하는 것**

- 1 기관은 달라도 아동은 하나의 보호체계를 경험해야 함
기관별 기록과 보호계획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아 보호 경험이 단절될 수 있음
- 2 아동과 가족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부담을 경험할 수 있음
•기관 간 정보공유와 보호계획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의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음
- 3 서비스가 지속되는 것과 아동의 삶이 안정되는 것은 다름
•서비스가 지속되어도 아동 삶이 나빠질 때는 아동 삶의 안정성을 고려한 장기 보호계획이 필요

한계점: 사례는 관리되지만, 아동의 삶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확장: 장기 보호계획 중심의 연속성 강화

아동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까지 함께 계획

- 1 기관이 아닌 아동을 중심으로 보호계획을 연결
•공공·민간이 함께 공유하는 보호계획과 연속적인 사례관리 체계 구축 - 정보시스템의 개편 필요
- 2 "이 아이는 3년 후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기준으로 보호 계획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아동의 안전과 회복, 안정적인 성장까지 고려한 Permanency Plan 수립
- 3 안정적인 삶을 위한 다양한 보호경로를 함께 설계
원가정보호 :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집중적 가족지원
대안양육 : 아동의 발달과 애착을 고려한 안정적인 양육환경 확보

지향점: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아동의 안전과 회복이라는 보호성과를 중심으로 장기 보호계획 설계 필요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이후,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개선과제

11 / 17

• POLICY TASK 03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다학제 의사결정

"혼자 보면 놓치고 함께 보면 보입니다"

아동학대는 의료, 심리, 발달, 교육, 법률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전문적 관점을 함께 검토할 때 더 정확한 판단과 아동 중심의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다학제 의사결정은 전문가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과정

의료 및 임상적 관점

보이지 않는 손상

아동의 신체 손상, 발달, 정신건강 등 전문적 평가를 통해 학대 판단과 보호조치의 정확성 향상

교육적 관점

보이지 않는 일상 변화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일상 속 작은 변화와 반복되는 위험신호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음

법률적 관점

보이지 않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

친권제한, 분리보호 등 어려운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도록 지원

지역사회의 관점

보이지 않는 생활환경

기관에서 놓칠 수 있는 일상 속 위험 신호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보호체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자원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이후,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개선과제

12 / 17

• POLICY TASK 04

아동의 다양성을 반영한 보호체계: 장애·발달지연 등 특수욕구 아동

"현재 아동보호체계에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식으로의 진화"

- 현재의 아동보호체계는 일반적인 아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 그러나 장애, 발달지연, 경계선지능, 만성질환,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은 학대의 위험과 보호의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아동 중심 보호는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체계 필요
"필요한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

장애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한 보호

1. 장애·발달지연·경계선지능 등 의사소통과 인지 특성을 고려한 조사와 사례관리
• AAC 등 의사소통 지원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의료적 특수욕구 지원

2. 만성질환, 의료적 부담 등 건강권 침해에 대한 조기 발견과 의료기관 연계 강화
치료와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정신건강 및 정서 지원

3. 정서·행동문제와 정신건강 위험을 고려한 조기 개입과 치료 연계 아동의 회복과 안정적인 발달을 위한 지속적 심리·정신건강 지원

• SEMINAR KEYNOTE · SUWON SYSTEM

공공화 이후, 이제는 보호체계의 '질'을 고민할 시간

공공화는 국가 중심의 조사체계 구축 뿐 아니라 국가가 아동보호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전환점!
이제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를 넘어 아동 중심(Child-centered)과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실현하는 보호체계로 발전 필요

DIRECTION 01 조사 중심 → 보호 중심

신속한 조사뿐 아니라
피해 아동의 회복과 장기적 보호
(Permanency)를 함께
설계하는 체계

DIRECTION 02 기관 중심 → 아동 중심

기관의 역할보다 아동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하는 체계

DIRECTION 03 대응 중심 → 예방·조기개입 중심

사후 대응을 넘어 조기 발견,
위험예측, 가족지원과 지역사회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

DIRECTION 04 역할 분담 → 공동 의사결정

단순한 역할 배분을 넘어,
다학제 협력과 공동 판단을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만드는 체계

"공공화의 지난 6년이 국가가 아동보호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맡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어떻게 더 잘 보호할 것인가'를 함께 만들어 갈 시간입니다."

• FRAMEWORK REALIGNMENT

유니세프 프레임워크로 다시 본 공공화 이후의 과제

공공화는 아동보호체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동일한 7개 영역을 ‘구축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가’** 관점에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법·정책 프레임워크

아동 중심과 아동 최선의 이익이 정책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02 대응체계 운영

아동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03 서비스의 연속성

사건 종결이 아니라 아동 삶의 안정성(Permanency)까지 지원하고 있는가?

04 최소기준과 감독

전문적 판단과 다학제 의사결정이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는가?
실패 사례를 점검하고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05 인적·재정 자원

전문성이 축적되고 지속가능한 보호체계를 운영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가?

06 아동·지역사회 참여

아동의 목소리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보호계획에 반영되고 있는가?

07 정보수집·모니터링

데이터가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가?

• CONCLUSION · JOINT ADVANCEMENT

공공화 이후 아동보호체계의 다음 과제: **잘하는** 보호체계

CATEGORY 01

① 지속가능한 보호체계를 위한 기반 과제

-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성 축적
-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고도화
- 지역 간 보호역량과 운영기반의 균형 확보
- 지역사회보호 인프라 확충(쉼터, 치료, 특수육구 지원 등)

기반과제는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아동보호체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과제

CATEGORY 02

② 새롭게 부각된 보호의 질 과제

-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보호(영유아)
- 장기 보호계획(Permanency) 중심 보호
- 다학제 전문판단과 사례 학습 체계
- 아동의 다양성, 특수육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호

질적 성장: 공공화의 다음 단계는 기반 강화와 보호의 질을 높이는 것. 두 과제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추진되어야 함

POLICY IMPLICATIONS

"공공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중요한 기반이자 새로운 전환점"

공공화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아동 중심과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보호체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이 안전함을 경험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책임지는 체계'입니다.
아동은 **제도**가 아니라 **보호**를 경험합니다.
'함께 살피고 **함께** 보호하는 수원형 아동보호체계'가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살피고, 함께 보호하는
2026년 수원형 아동보호체계구축 정책토론회

발제 ②

데이터로 본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와 시민인식

서동미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발제 ②

데이터로 본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와 시민인식

서동미 |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책토론회

2026년 **함께** 살피고 **함께** 보호하는 수원형 아동보호체계 구축데이터로 본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와 시민인식

2026. 7. 10. (금)

도시정책연구실
서동미 전문연구위원SRI 수원시정연구원
SUNON RESEARCH INSTITUTE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2

발표 순서

- 01 수원시 아동학대 관련 주요 현황
- 02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통한 10가지 발견
- 03 수원시민 인식조사에서 본 6가지 시그널
- 04 수원시 아동학대 현장의 8가지 쟁점
- 05 미래지향적인 수원형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9가지 제안

1

수원시 아동학대 관련 주요 현황

1. 수원시 아동학대 관련 주요 현황

4

수원시 아동 인구 추이 (2018~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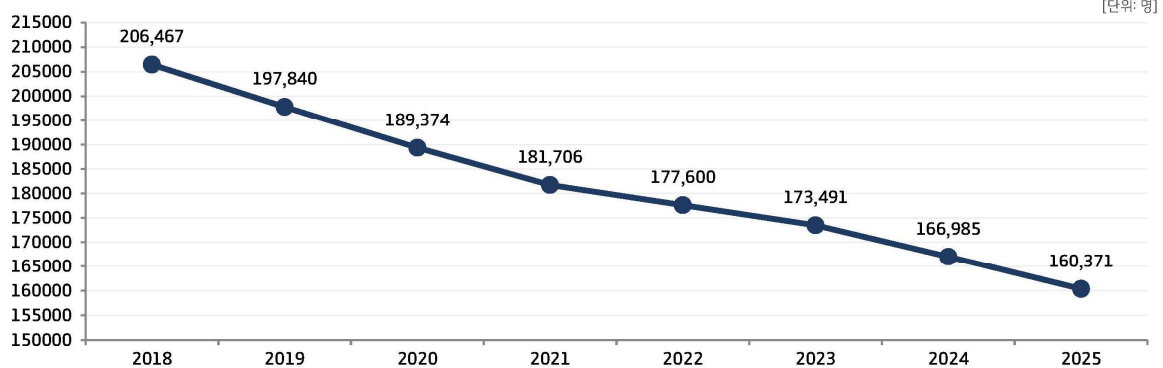
- 추계 아동인구(0~17세)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

206,467명 → 160,371명

2018년

2025년

- 46,096명
약 22% 감소



자료: 수원시데이터포털(각 년도 12월 기준)

1. 수원시 아동학대 관련 주요 현황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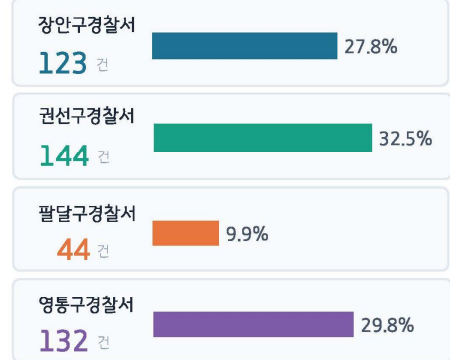
구(區)별 아동인구(0~17세)와 아동학대 현황

- 구별 아동 인구 수는 영통구 60,141명으로 최다, 팔달구 20,383명으로 최소
- 2025년 기준, 행정구역(경찰서 관할별)에 따른 피해아동 판단 건수는 영통구, 권선구가 높음 (팔달구경찰서는 25.8월 개청)

[수원시 구별/연령별 아동 현황] 총 160,371명

[단위: 명]

[관할별 피해아동 판단 건수] 총 443건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2025), 수원시 데이터포털(2025.12월 기준)

1. 수원시 아동학대 관련 주요 현황

6

수원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기관 간 역할 정립 과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조사 지원은 2022~2023년경까지 '실습처럼 함께 돕는' 단계로 운영된 뒤 완전히 분리됨



자료: 아동보호전문기관(FGI 결과, 2026.6.2.)

1. 수원시 아동학대 관련 주요 현황

7

선행연구로 본 수원시 아동학대 진단 (경기여성가족재단, 2019; 2020; 2022; 2025)

- 수원시와 같은 대도시권은 파편화된 네트워크 문제를 겪고, 소득 격차에 따른 지역별 아동학대 집중 지역이 관찰됨(2019)
- 공공 인력 충원(2020)과 사례관리 상담원의 과부하 해소(2022) 등 대응 인프라 고도화가 지속 추진되어야 함
- 120만 수원시민 인식 격차를 좁히는 1차 예방 정책(2025)이 결합된 수원형 아동보호 공공 거버넌스 모델 정립 시급

① 발생환경·지역 취약성

2019

- 아동인구 도내 최대·신고/판단 최상위권
- 경제적 취약지역일수록 발견을 ↑

→ 동·구별 타깃형 모니터링·예방 인프라 배치 시급

③ 심층 사례관리·고위험

2022

- 상담원 1인 월 약 42건-기준(22건) 초과
- 정신질환·중독·개입거부 사례- 실천 역량 한계

→ 강제성 제도 + '마스터 슈퍼비전' 체계 지원



② 공공 인력 수요·과부하

2020

- 도내 최대 인력 필요: 조사 31.7명·사례 16.6명
- 전담공무원 소진·이직 우려

→ 지속적인 인력 확충+전문성 강화 지원체계 마련

④ 1차 예방·인식 개선

2025

- 대도시 특성: 사후적발 한계→ '1차 예방' 환경
- 도민 54.5% 신고의무자 제도 미인식

→ 대상별 '수원형 맞춤 교육' 고도화 필요

- ⑤ 네트워크 통합·컨트롤타워 - 수원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드림스타트 등 보호 자원이 풍부하나 역할 합의·정보공유 미흡 → 파편화 네트워크

종합

1. 수원시 아동학대 관련 주요 현황

8

2021년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도입 이후,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 현황

- 2021년 공적 대응 전환 이후, 조례·인력·대응체계·공공의료 전 영역에서 기반이 단계적으로 강화됨

1

조례 개정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2016.6.14. 제정)

2023.4.20 개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의 명문화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사회복지 직렬로 임용토록 명시
-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피해아동 가족지원 확대

2025.9.30 개정

- 위기사건 초기지원(학대 판단 전) 근거 마련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

2

전담 인력 확충 및 경찰행정과 협업

공적 대응의 핵심

2021.7 신설

아동보호팀 신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명 (2021.7) → 14명 (2026.6)

중복진술최소화도입

- (구)서부경찰서 시범(2023)→ 전 경찰서 확대(2024)
- 피해자 진술이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듦

3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 구축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With Us)」

2022.5.2 개소

경기도 최초 설치

참여 기관

시·교육지원청·4개 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운영 방식

주 2회 사례판단·정보 공유 (경찰망을 지자체에 도입)



4

보호서비스 강화(공공의료·치료 등)

예방과 보호 자원의 양적·질적 확충

전담의료기관 확대

동수원병원, 화홍병원(2021)→ 경기의료원수원병원(2025)

2023. 이후

수원아보전 별도 심리치료팀 운영·시 지원 심리치료사 배치

2024. 이후

- 수원아보전 주도 일반사례 대상 초기개입 지원 시작
- 2025년 이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수원시 참여

2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통한 10가지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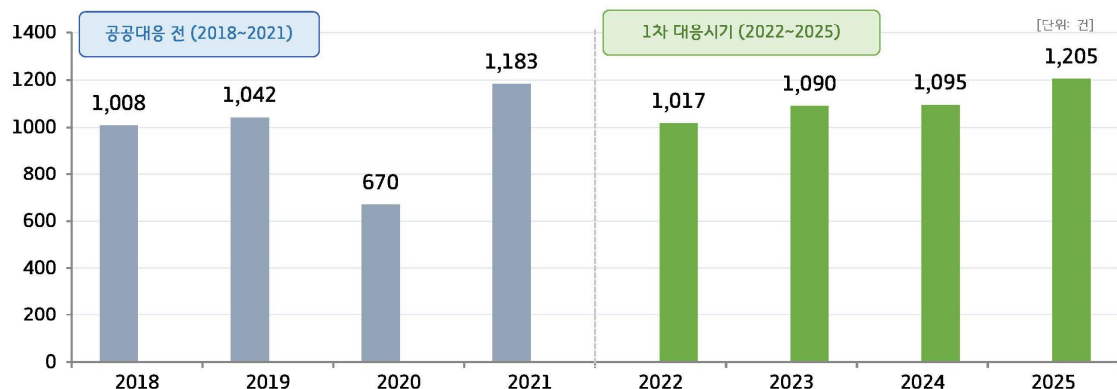
2. 수원시 실태조사 통한 10가지 발견

10

발견1 : 아동학대 신고는 8년 간 지속 증가함

- 아동학대 신고는 코로나(2020) 발생 연도를 제외하고 1,000건 이상의 신고 유지, 2025년도에 1,205건으로 최다 접수
- 신고 증가 원인으로는 휴대폰을 소지 아동의 증가, 예방 교육의 효과 등으로 볼 수 있음

[수원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자료: 공공대응 전(2018~2021)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 1차 대응시기(2022~2025) 수원시 행정자료

2. 수원시 실태조사 통한 10가지 발견

11

발견2 : 수원 발견율은 대체로 전국·경기보다 낮음 - 2023년만 일시 역전, 2024년 재하락

- 공공대응 전, 1차 대응시기에도 수원은 대체로 전국·경기보다 낮음 — 2023년만 역전(3.82%), 2024년 3.10%로 재하락
- 발견율은 학대 발생뿐 아니라 신고·판단 관행·인구변동의 영향을 받으므로, ‘발견율 낮음=학대가 적다’로 단정은 어려움

※ 피해아동 발견율 = 아동학대사례 건수 ÷ 만 0~17세 추계아동인구 × 1,000

[전국, 경기, 수원 피해아동 발견율 비교]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2~2024), 수원시 행정자료(2022~2024) / 2025년 전국, 경기자료 미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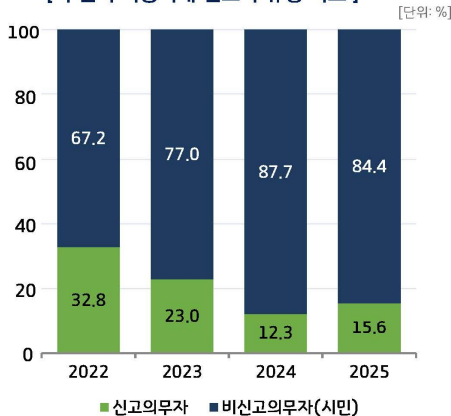
2. 수원시 실태조사 통한 10가지 발견

12

발견3 : 신고의무자 신고는 감소하고, 시민 신고는 증가함

-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 감소하고(17.2%p), 비신고의무자(시민) 신고 비율은 증가함 (신고건수 증가, 부모·본인·이웃 신고가 증가함)
- 초·중·고 교직원 비중은 38.5%(’22)→63.8%(’25)로 상승했으나 건수는 감소, 사회복지 공무원 등 신고 건수(비중) 급감함

[수원시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비교]



비신고의무자 신고 유형 (2022: 649건 → 2025: 943건)

부모 (26.8% → 45.4%) 아동본인 (22.8% → 33.4%) 이웃,친구 (6.1% → 10.3%)

[신고의무자(27개군) 주요 직군별 신고 건수·비중 (2022 → 2025)]

직군	2022년	2025년	건수 증감
초·중·고 교직원	122건 38.5%	111건 63.8%	▼ -1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6건 24.0%	6건 3.4%	▼ -7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7건 14.8%	8건 4.6%	▼ -39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21건 6.6%	3건 1.7%	▼ -18
의료인·의료기사	14건 4.4%	2건 1.1%	▼ -12
소방구급대원	4건 1.3%	11건 6.3%	▲ +7
보육교직원	4건 1.3%	8건 4.6%	▲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건 4.1%	8건 4.6%	▼ -5
신고의무자 전체	317건 100%	174건 100%	▼ -143 (45.1%p)

자료: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조사」, (수원시 내부자료·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준: '25.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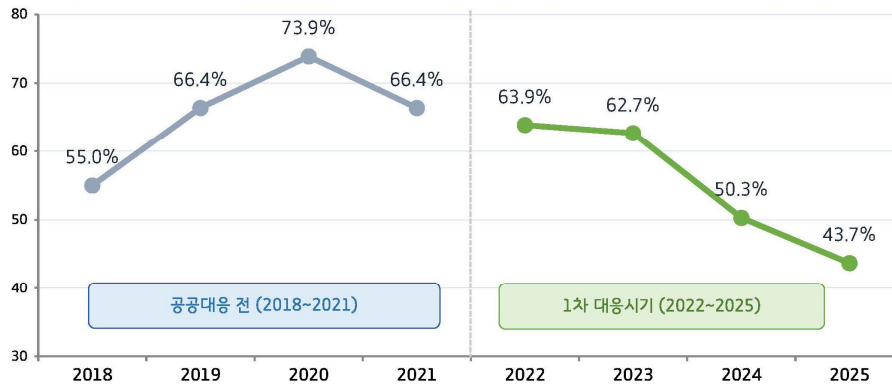
2. 수원시 실태조사 통한 10가지 발견

13

발견4 : 아동학대사례 판단율은 지속 하락함

- 아동학대 판단 비율 : 55.0% (2018) → 73.9% (2020) → 43.7% (2025)
- 2020년 높은 판정율은 코로나로 인해 아동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고, 신고 감소가 맞물려 판정율 일시 상승으로 이해
- 경찰의 일반 상담도 지자체로 통보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도 주된 배경으로 볼 수 있음 (감사원 지적, 경찰청 시스템 개선 2025.6.)

[수원시 아동학대 판단율 추이]



경찰도 학대 혐의 없다고 확인한 사항을 사청이 한 번 더 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진짜 집중해야 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원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FGI, 2026.6.12)

자료: 수원시 행정자료(2022~2025), '경찰, '아동학대 지자체 통보' 3만 건 누락...감사원 지적 뒤 개선, 한겨레(2025.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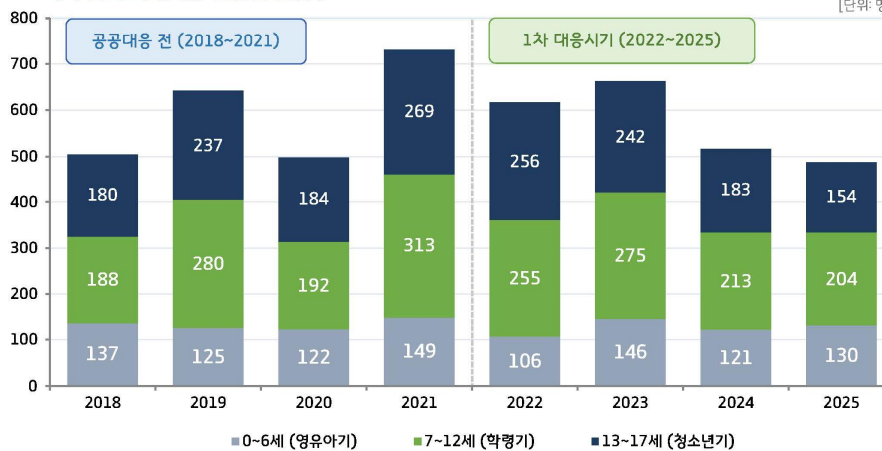
2. 수원시 실태조사 통한 10가지 발견

14

발견5 : 학령기(7~12세) 아동이 지속적인 핵심 위험군임

- 공공대응 전: 학령기, 청소년기 중심 피해 / 1차 대응시기: 청소년기 아동 비중 ↓, 영유아 유지
- 상대적으로 자기주장이 낮은 영유아와 초등 학령기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 & 보호 강화 필요

[수원시 피해아동 연령별 현황]



사례관리대상자 (학대전담위자, 2025)

부모 85.2%

친부 51.2% · 친모 34.0%

8년 전 기간 80~90% 유지

자료: 수원시 행정자료(2022~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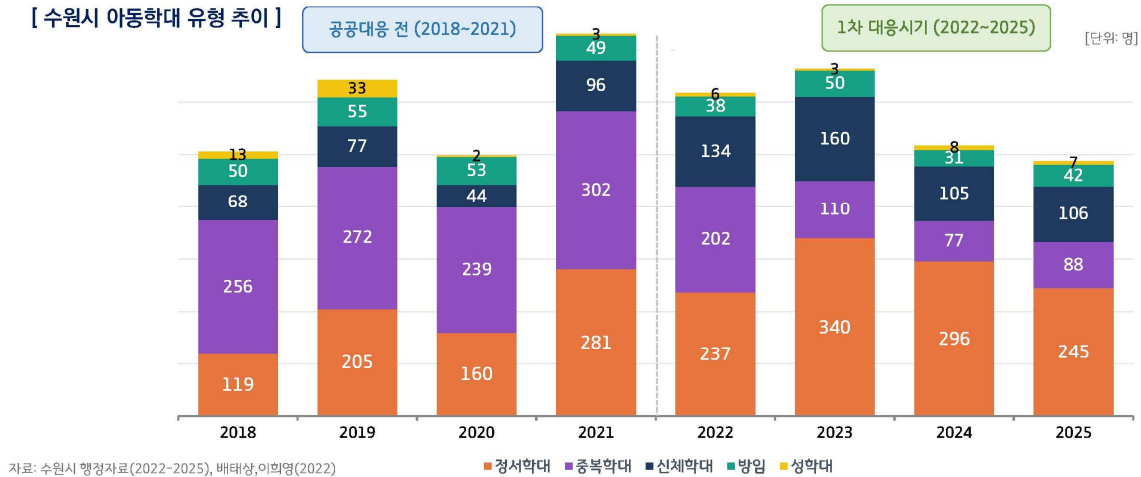
2. 수원시 실태조사 통한 10가지 발견

15

발견6 : 아동학대사례 유형 구조가 변화함

- **공공대응 전** 정서학대·중복학대 중심 / **1차 대응시기** 정서학대 강화, 중복학대 감소 (가정폭력 노출도 정서학대로 규정, 2022.6. 아동복지법 제17조5호개정)
- 정서학대 증가는 일반상담·신고 증가와 맞물리는 현상으로 이해 가능, 현장은 정서학대를 판단하는데 혼란을 겪을 수 있음

[수원시 아동학대 유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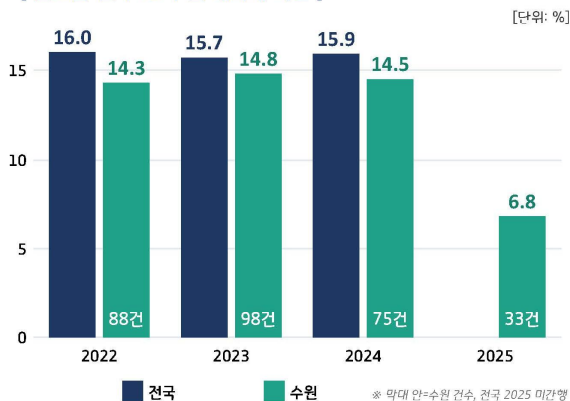
2. 수원시 실태조사 통한 10가지 발견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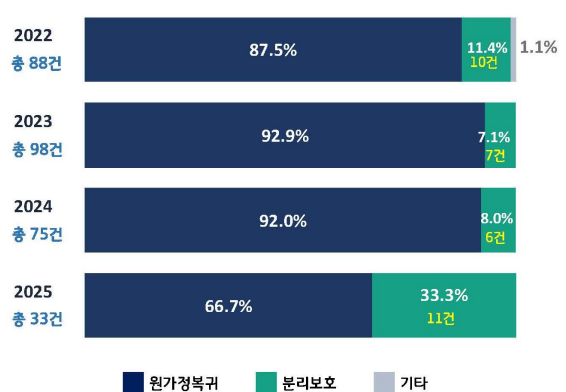
발견7 : 재학대 비율은 낮아지고, 분리조치 비중은 증가함

- 수원시 재학대 비율은 3년 연속 전국보다 낮고, 2025년에는 6.8%로 전국 3년 평균 15.9%의 절반 이하까지 감소함
- 재학대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는 8.0%(2024) → 33.3%(2025)로 4배 이상 확대되었으나, 전체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작음

[연도별 전국 vs 수원 재학대 비율]



[연도별 재학대 피해아동 조치 구성]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전국, 2022~2024) · 수원시 내부자료(2022~2025), ※ 사망 전 기간 0건

2. 수원시 실태조사 통한 10가지 발견

17

발견8 : 예방 활동은 이뤄지나, 체계적인 운영 전략 필요

- 수원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민 참여형 캠페인 · 부모교육 · 9개 유관기관 협력 등 ‘함께 만드는 예방’을 추진함
- 아동학대예방 활동은 일회성 운영 극복과 고위험군(영유아, 학령기) 부모에 대한 접근 강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사업 구조]

- 예방 캠페인 · 홍보**
시민이 직접 만든 메시지 — 손팻대·플래카드(20개 지점)·홍보물품 등
- 부모교육**
예비·초기 양육기 부모 교육(보건소 연계) / 장애아동·한부모 등 대상별 맞춤 교육
- 교육기관·신고의무자 및 부모교육 실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육 / 신고의무자 및 부모 교육
- 유관기관 협력**
경찰·교육청·아보전·센터 등 9개 기관 공동 캠페인(11.19 아동학대예방의 날)
-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활동은 일회성, 단회기로 운영한 것을 비추어 볼 때, 관련 예산은 매년 유동적으로 편성되거나, 낮은 규모일 것으로 판단됨**

자료: 수원시 행정자료(2022-2025)

[일상 속 예방활동 시범운영 : A구 B동 사례 ‘아동안전지킴이’]

- 아동안전지킴이 위촉**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 — 통장 약 30명 위촉 · 아동보호 교육 이수 (MOU 체결)
- 일상 동행 발굴**
e아동행복지원 방문 시 통장 동행 — 공무원보다 거부감 적고 가구 사정 파악 용이
- 지역 행사형 캠페인**
벼룩시장·라이브시장에 부스 운영 / 상·하반기 정기 캠페인 운영

“아동학대는 시청만 심각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아동학대가 몇 건인지조차 알지 못해요. 조용히 처리되니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죠.”
“통장이 ‘우리 동네 몇 건이냐’ 물어도 동도 모르니 답을 못 하고 그러니,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 A구 B동 통장·팀장 인터뷰 (2026.6.10.)

2. 수원시 실태조사 통한 10가지 발견

18

발견9 : 사례관리 건수는 꾸준히 누적되고, 조기지원 실적은 빠르게 확대됨

- 사례관리는 연 1,300~1,500건 규모이며, 종결없이 누적되는 지속 사례가 4년 평균 54.9%로 관리 물량이 이어지는 구조임
- 조기지원은 대상 15→56건, 서비스 28→230건으로 1년 사이 크게 늘어 심리치료·상담 중심으로 내용이 구체화 됨

[아동학대 사례관리 현황]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2025
지속사례관리	892 66.2%	719 48.4%	754 54.4%	658 50.7%
신규사례관리	456 33.8%	767 51.6%	632 45.6%	639 49.3%
합 계	1,348	1,486	1,386	1,297

사례관리 현장은,

- 상담원 1인당 동시 관리 건수 : 47건 (2025년 기준)
- 한 사례당 사례관리 종결까지는 최소 9개월이 기본 원칙이나 상한이 없는 실정
- 사례관리 외 예방교육·캠페인, 방문형 가정회복, 일반 상담 등 추가 업무 부과됨

자료: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행정자료(2022-2025),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인터뷰(2026.6.2)

[조기지원(아동학대 판단 전 개입) 추진 현황]

대상 가구 (아동, 가족) 제공 서비스 (상담, 교육 등)

15 → 56 건 **28 → 230 회**

2024 → 2025, 약 3.7배 증가 2024 → 2025, 약 8.2배 증가

“사례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교육도 나가고 캠페인도 하고, 가정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들려야 하니까 일이 계속 더해져요. 상담 한 번 다녀오면 계획서 쓰고, 사정서 쓰고, 척도 넣고 전산 입력까지, 손 안 가는 게 없어요. 어제도 밤 9시 반에 상담 끝났어요.”

—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인터뷰 (2026.6.2.)

3

수원시민 인식조사에서 본 6가지 시그널

3. 수원시민 인식조사의 6가지 시그널

20

수원시민 아동학대 관련 인식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시민의 아동학대 인식 수준과 정책 수요를 종합 파악하여 관련 정책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조사대상** : 아동·청소년 (당사자 관점) / 보호자·일반시민 (예방 및 신고주체) / 신고의무자 (현장 대응 직군)

 조사방법 설문조사 (온라인, 대면 병행)

 전체 표본 목표 500명 · 실제 1,478명

 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수원시정연구원

 아동·청소년

 보호자·일반시민

 신고의무자

423명 (목표 200명)

조사대상
수원시 거주 만 11~18세
모집단
76,610명
측정초점
학대 인지 및 자기보호 행동

400명 (목표 200명)

조사대상
수원시 거주 만 19~70세
모집단
823,170명
측정초점
신고 의향·장벽, 예방교육 수요

655명 (목표 100명)

조사대상
신고의무 27개 직군 종사자
모집단
50,000명(추정)
측정초점
신고의무제도 인지·대응역량

3. 수원시민 인식조사의 6가지 시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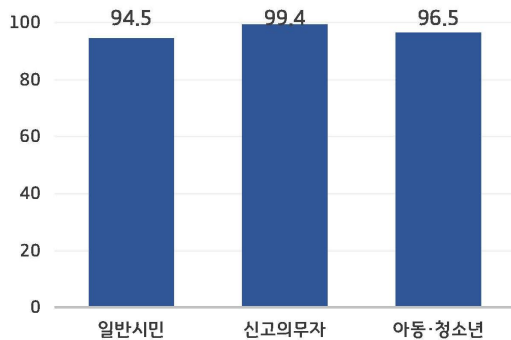
21

시그널1 : 아동학대 용어는 알지만, 신고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편임

- 아동학대 용어(아동), 법적 정의(성인) 인지율은 세 집단 모두 94% 이상으로 높음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정답률은 일반시민이 44.5%로, 아동·신고의무자보다도 낮음 → ‘안다’와 ‘할 수 있다’의 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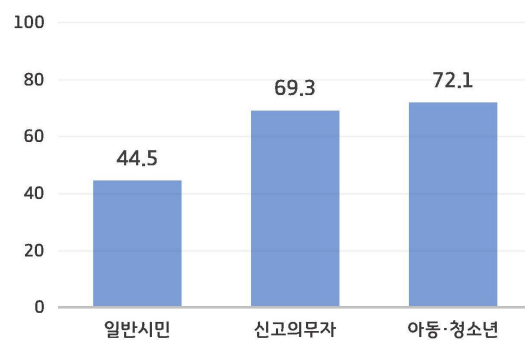
[아동학대 용어 및 법적 정의 인지율]

[단위: %]



[신고전화 112 정답률]

[단위: %]



자료: 수원시민 아동학대 인식조사(2026) | 정의 인지='알고 있다' 응답, 112 정답률=신고번호 정확 응답 비율 (일반 N=400·신고 N=655·아동 N=423)

3. 수원시민 인식조사의 6가지 시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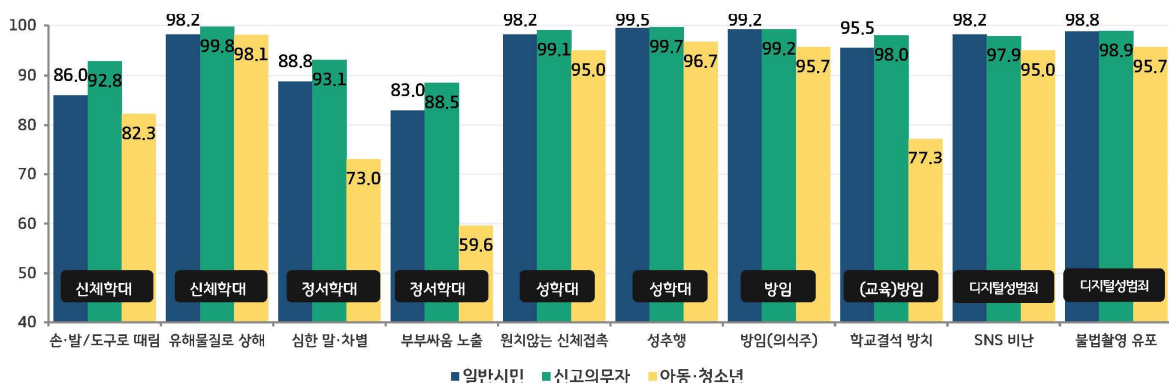
22

시그널2 : 아동은 ‘정서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

- 아동학대 행위유형 10개 학대인지율 평균: 일반 94.5% · 신고의무자 96.7% · 아동 86.8%
- 신체·성학대 인식은 모두 높으나, 아동은 정서학대(부부싸움 노출 59.6%·심한말 차별 73.0%), 교육방임(학교결석 방치 77.3%) 인식이 낮음

[행위유형별 학대 인지율]

[단위: %]



자료: 수원시민 아동학대 인식조사(2026) | '학대인 것 같다'+'확실히 학대다' 합산 비율 · 세로축 4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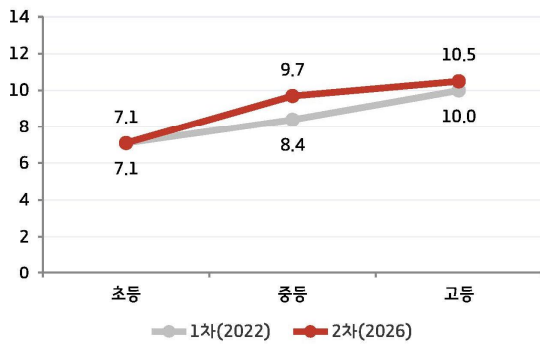
주: 디지털 성범죄 용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SNS가 발달한 사회 속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성학대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으로 질문을 구성하였음.

시그널3 : 학년이 오를수록 아동은 침묵은 선택함 (1차 조사와 비교)

- ‘그냥 참는다’의 학년 상승 패턴은 1차(2022)·2차(2026) 모두 동일, 4년간 거의 개선 없음
- ‘신고하겠다’는 고등학년에서 54.3%→ 39.1%로 15.2%p 하락 → 침묵 고착되거나, 신고 의지 약화가 심화됨으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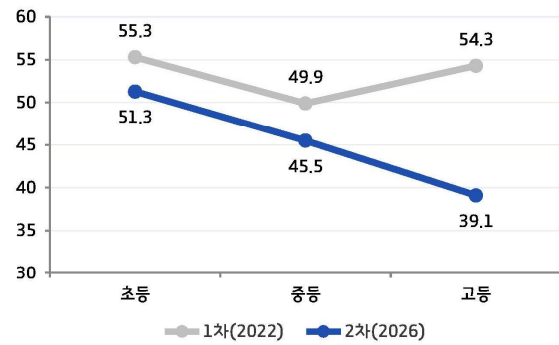
[학교급별 아동학대 발생시 ‘그냥 참는다’ 비율]

[단위: %]



[학교급별 아동학대 발생 시 ‘기관·경찰에 신고’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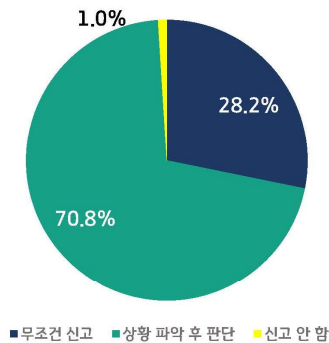
자료: 수원시 제1차(2022)·제2차(2026) 아동 대상 시민인식조사

주: 1·2차는 조사설계·문항·표본이 동일하지 않아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으며, 추세·경향 파악 목적으로만 해석함 (1차 조사 아동 N=1,067, 2차 조사 아동 N=423)

시그널4 : 신고 의향은 높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조건부 신고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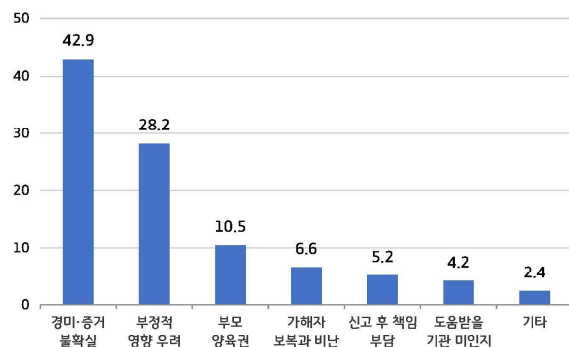
- 일반시민 99.0%가 신고 의향이 있으나, 이 중 70.8%는 ‘상황 파악 후 판단’하는 조건부를 선호함
- 시민이 망설이는 이유 1위는 ‘학대 정도 경미·증거 불확실’(42.9%), 2위 ‘부정적 영향 우려’(28.2%) 순

[신고 의향 분포]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1순위]

[단위: %]



자료: 수원시민 아동학대 인식조사(2026) · 일반시민 N=400 | 망설이는 이유는 ‘상황 판단·신고 안 함’ 응답자 1순위 기준

3. 수원시민 인식조사의 6가지 시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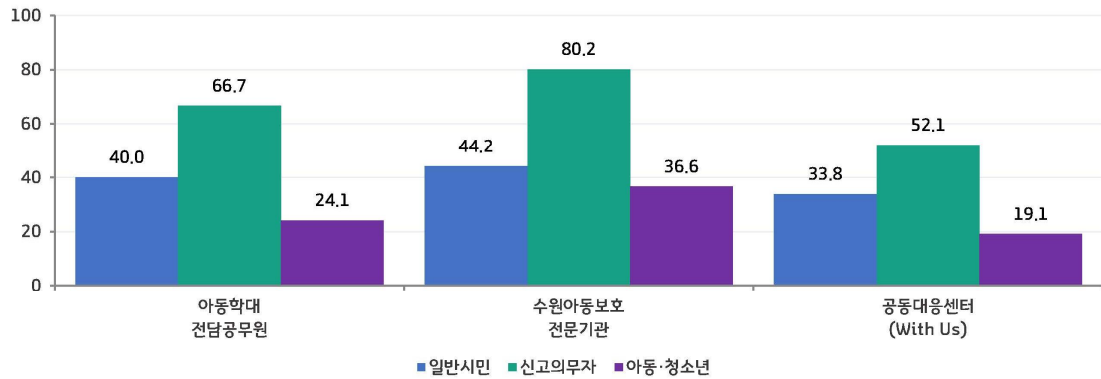
25

시그널5 :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

- 수원 아동학대 대응 3대 주체 인지율: 신고의무자는 52.1~80.2%, 일반시민·아동은 모두 50% 이하 (특히, 아동이 낮음)
- 특히, 공동대응센터(With Us)는 아동 19.1%·일반시민 33.8%로 가장 낮음 →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기관 인지도 제고 必

[아동학대 대응기관별 인지율 ('알고 있다')]

[단위: %]



자료: 수원시민 아동학대 인식조사(2026) | 기관별 '알고 있다(들어본 적 있다)' 응답 비율

3. 수원시민 인식조사의 6가지 시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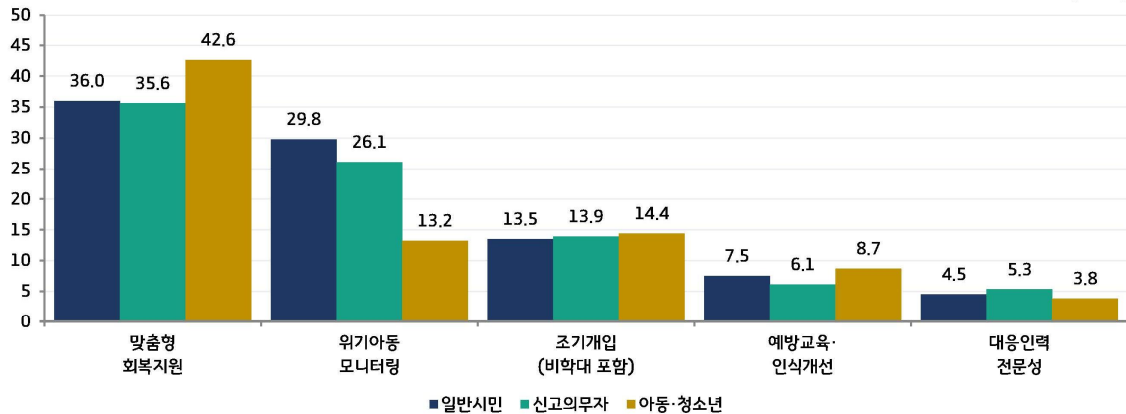
26

시그널6 : 수원시민 아동학대 관련 우선 정책수요는 '맞춤형 회복지원 확대'

- 필요 정책 1순위, 세 집단 모두 '피해아동·가족 맞춤형 회복지원 확대'(36.0~42.6%)로 일치함

[아동학대 관련 필요정책 (1순위)]

[단위: %]



자료: 수원시민 아동학대 인식조사(2026) | C2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 응답 분포

4

수원시 아동학대 현장의 8가지 쟁점

4. 수원시 대응현장의 8가지 쟁점

28

누구를, 어떻게 만났는가? (질적면담 운영 개요)

- **조사목적** :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일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통해 양적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 **조사대상** : 수원시 아동보호 체계 공공·민간·발굴·수사 전 계층 담당자 10회 심층면담 (2026.6.2~6.23, 총 34명)
- **조사내용** : 발굴-조사-분리-복귀-예방으로 이어지는 대응 전 단계의 현장 관점을 균형 있게 수렴

[면담 대상 구성]

 공공 (시·동) 아동보호팀장 · 아동정책담당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A동 동장·팀장 4개 그룹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4개 분야 담당자 및 관리자) 3개 그룹	 발굴·보호 (민/관) 아동보호전담요원 · 통합사례관리사 신고의무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2개 그룹	 수사 (경찰) 아동학대전담경찰관 4개구 (장안·권선·팔달·영통) 1개 그룹
---	--	---	---

[공통 질문 영역]

공공화 이후 변화·성과

사례관리·특수사례 개입

보호자·원가정 복귀

재학대 방지

예방교육·권리옹호

기관 간 협업

4. 수원시 대응현장의 8가지 쟁점

29

현장에서 확인한 8가지 쟁점

● 수원시 대응 단계별로 인력·자원의 한계가, 발굴·조사단계 보다는 ‘분리 이후’와 ‘예방·협업 기반’ 단계에 집중되어 나타남

① 발굴 · 조사 단계	② 보호 · 복귀 단계	③ 예방 · 협업 기반
1. 인력 부족·업무 과중·소진 - 전담공무원 1인당 100건 이상 담당 - 보건복지부도 수원을 총원 필요 지자체로 지목 (소요책임인원 최근 3년 평균 발생 건수/50건, 수원인 20명 필요) - 경찰 APO는 서별 1~2명이 가정폭력 등 검무 - 아보전 상담원 소진예방(1인당 47건)으로 ‘굿타임’ 등 별도 회복프로그램 운영하나, 제감하기 어려움	3. 분리 후 ‘갈 곳’이 부재함 - 아동을 분리해도 보호처가 부재한 경우가 많음 - 특히 장애아동은 특성에 맞는 시설이 없어 일반 쉼터→장애 쉼터→중장기시설로 떠돌이 이동 · 자리 날 때까지 대기함	6. 기관 간 협업·정보공유 - 공동대응센터(With Us)로 경찰·시·아보전 정보 공유·사례판단 회의 정착(주2회)에 대한 자부심 - 민관 상호존중 분위기이나, 교육·의료기관 및 사례논의를 위한 다양한 기관 연계는 아직 과제
2. 가정과 학교, 기관 간 연계의 벽 - 민원성·비협조 가정은 모니터링 자체를 거부 - 은둔·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학교에서도 방안이 없다’는 호소 - 사례관리 판단(발굴)과 학대판단 결정이 어긋날 때, 발굴 현장은 따를 수밖에 없음 → 학대판단회의에 다양한 의견 반영 필요	4. 원가정 복귀의 딜레마 - 제도상 최종 목표가 ‘원가정 복귀’로 분리·복귀 반복 - 아동보호정책 목표는 원가정복귀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	7. 예방교육·권리옹호 실효성 - 예방교육 수요는 높으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 형식화 우려 - 아동참여·권리옹호 사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
	5. 특수사례 급증 - 정서학대·방임·ADHD·경계선지능 아동, 눈에 띄게 증가 - 부모의 지적장애가 학대로 이어지는 사례 다수 - 출생미등록·은둔형 등 기존 사례관리 틀로 감당 어려움	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사례관리 1건당 최소 9개월 소요되며, 신규 사례가 계속 적체되고 있음 - 학대 판단 ‘전’ 일반상담 사례를 선제 개입할 초기개입지원센터(가칭) 설치 요구

주: APO는 아동학대예방경찰관을 뜻하며, 영문 명칭 Anti-abuse Police Officer의 약자임

5

미래지향적인
수원형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9가지 제안

5. 수원형 아동보호체계 9가지 제안

31

미래지향적인 수원형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9가지 제안

● 실태조사·시민인식·질적면담(FGI)을 대응 단계별 9대 과제로 종합하여 제시함

실태조사

시민인식

질적면담(FGI)

예방·발굴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사업 추진	분리·보호	회복·기반
1 동(洞) 단위 발굴 시범사업 확대 이벤트성→공공 주도 상시 발굴·예산 확보 대상 동·통장,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복지정책과(협조) 실태 FGI	4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사업 추진 높은 양육강도가 학대로 이어져, 지원 절실 표적 아동·청소년,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유관기관 인식 FGI	7 장애아동 분리·보호 인프라 확충 특수아동 전담 분리시설 신설·아동 분리시, 장애인복지과 협력 의무화 대상 피해아동(장애)·장애인복지과 실태 FGI	9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처우개선 지속적인 인력 확충, 처우개선 체감도 향상 대상 전담공무원·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실태 FGI
2 e아동행복지원사업 활성화 적극 안내·담당자 인식교육·안내문 제작 대상 위기 영유아·통장·담당자, 아동친화팀 실태 FGI	5 수원형 정서학대 판단기준 마련 다수발생 사례에 대한 기준 합의·지속 갱신 대상 경찰·아동보호팀·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인식 FGI	8 아동학대의심가정회복 전담조직신설(가정)수원시아동행복몰타리 조기에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전담팀/센터 설치 대상 위기가정·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실태 FGI	
3 '상호존중' 아동학대 예방교육 방향 정당한 훈육·지도 존중, 관계 감수성 교육 표적 아동·청소년,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인식 FGI	6 With Us 2.0 : 공동대응 고도화 자문위원 풀·사례별 전문가(정신과 등) 참여 대상 공동대응센터·유관기관, 아동보호팀 FGI		

자료: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조사·시민인식조사·질적면담(FGI) 종합 (2026)

5. 수원형 아동보호체계 9가지 제안

32

제안1 [예방·발굴] : 동(洞) 단위 위기아동 발굴체계 구축 - '우리 동네 일'로 전환

- 시민 신고의 시대(84%, 2025) : 시민이 '제1 발견자'이나, 행정복지센터는 현황을 알기 어려워 발굴에 대한 동기 ↓
- 이벤트성 활동은 주로 민간이 담당하고, 상시 발굴·총괄은 공공에서 정기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원화 예방활동 제안

근거 — 데이터·현장	제안
● [실태] - 비신고의무자(시민) 신고 67.2%→84.4%, 시민이 제1 발견자로 전환 ● [FGI] - A구 B동 '아동안전지킴이' 시범 운영 (2025, 통장 30명, 아동보호전문기관과 MOU) : e아동행복지원 등 가정방문 시, 공무원과 통장 동행 발굴 효과 확인 ● [FGI] - '동에서는 우리 동네 아동학대 건수조차 모른다': 아동학대 체감·동기 부족 ● [실태] - 이벤트성 아동학대 예방활동(캠페인, 교육), 관련 성과관리 비체계적 → 예산이 유동적·소규모로 추정	● 동 단위 발굴 시범사업(아동안전지킴이), 4개구 전 동으로 확대 검토 - 대상: 1)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확대), 2)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에 '위기아동 발굴' 정식 포함 - 내용: 동 관리자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와 연계), 가정방문 동행, 지역사회 모니터링, 간담회(연 2회) 등 ● 사업부서 역할 - 운영계획 안내,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예산 편성, 운영결과 성과관리 - 동별 신고·발견을 정기 환류→ '우리 동네 일'로 체감 ● (그 외) 수원시 예방활동 방향을 설정해 전략적 운용 및 역할 재구조화 - 수원시 전체 아동학대 예방활동 점검 및 발전방안 수립 필요 - 이벤트성 캠페인은 민간 주도 (공공 협조) - 상시 발굴 체계 구축·예산 확보는 공공 주도 (민간 협조)

자료: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조사(2022~2025)·질적면담(FGI, 2026.6) 종합

5. 수원형 아동보호체계 9가지 제안

33

제안2 [예방·발굴] : e아동행복지원사업 활성화 전략 수립 - 위기 영유아, 학령기 아동 집중 타킷

- 영유아 등 위기아동 조기 발굴이 과제 - 서울은 출산가정 보편방문이라는 별도 사업(서울아기 건강 첫걸음)과 연계하나, 수원은 한계가 있음
-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위기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을 집중 타킷으로 발굴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근거 — 데이터·현장	제안
• [실태] -영유아(0~6세) 피해아동 수 매년 100~150명 지속 (자기표현이 어려운 핵심 취약군) • [노원구-안내문] -강한 민원 다수로, 조사 전 안내문을 직접 제작·분기별 발송 (공개 프레임으로 전환) → 항의 전화 사실상 사라짐 • [노원구-동장/팀장 별도 협의회 추진] -동 e아동 담당 직원들을 직접 불러, 조사 방법·접근 방법·민원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 실시 (동마다 노하우가 달라 공유의 자리로 활용) • [수원-한계] -동에서는 본 사업을 신규 공무원에게 배치, 별도 교육 부재, 매뉴얼만 존재 -아동학대 등 체감 부재 속, 관리자의 관심과 동기부여가 낮은 실정	• (대상자)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안내함 - 안내문·홍보물을 제작해 대상 가정에 분기별로 발송 • (팀장 및 담당자) 인식 및 전문성 강화 - E아동행복지원 담당 공무원 교육·가이드라인 정비, 실무협의체 운영 • (동장 교육) 인식 및 리더십 강화 - 동 단위 발굴 책임자로서 동장 대상 교육 실시 • (위탁 주민과 동행 방문 적극 권장) - 제안 1에서 위촉한 '아동안전지킴이(가칭)'와 가정방문시 동행 • 수원형 긍정양육 교육패키지(가칭) 신설 - 해당 부모 대상 긍정강화 방안으로 제안 - 온오프라인 교육 수료 시, 수원지역화폐 및 식음료 쿠폰 등 제공



자료: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조사(2022~2025)·질적면담(FGI, 2026.6)·노원구청 기관방문(2026.5.19.) 종합

5. 수원형 아동보호체계 9가지 제안

34

제안3 [예방·발굴] : 아동대상 '상호존중'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계 속 존중 중심으로)

- 3주제 공통 : 예방교육으로 아동 신고는 늘었으나, '권리·신고' 중심 교육이 정당한 훈육·지도까지 '학대'로 인식·악용함
- 나·타인·경계를 함께 존중하는 '상호존중(3R)' 교육으로 재설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찾아가는 권리교육'을 토대로 확장; 예산 지원)

① 아동학대전담 경찰관 (FGI 6.23)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 (FGI 6.4)	③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FGI 6.2)
신고는 잘하나 '악용' 정당한 훈육·일탈 제지까지 '아동학대'라며 역이용해, 재신고 반복 정서학대에 대한 개념 왜곡 초등 저학년도 '손 씻어라' 잔소리에 "아동학대"라 반응 교육 내용의 문제 '화내면=학대'식 단순교육 → 제대로 된 주기적 교육 + 아동 대상 교육 병행 필요	즉시·충동 신고 핸드폰으로 '욱'한 감정에 바로 신고 (신고 편의가 충동 신고로) 수단화된 신고 등교 거부·귀가지도 상황에서 부모 제지를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 반쪽 효과 권리·신고 교육은 효과 있었으나, 책임·관계 교육이 부재	이미 전환 시작 캠페인·신고의무자 교육 → '찾아가는 권리교육'으로 대체(자·고학년 구분) 콘텐츠 확장 중 AI 인성교육·양성평등(가정 내 관계)까지 확장 운영 방향성 강화 '권리'를 바탕으로 관계 속 존중 중심으로 방향성 강화

제안 — 수원형 '상호존중 3R' 아동 교육(가칭) (권리 + 책임·존중 균형)

R 나를 존중해요 (Respect Myself) 내 몸·감정·안전을 소중히 —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도움을 청해요' (신고할 힘은 유지)	R 다른 사람을 존중해요 (Respect Others) 친구·교사·보호자의 감정과 권리도 존중 — 권리에는 책임이 따름(악용 예방)	R 서로의 경계를 지켜요 (Respect Boundaries) 몸·말의 경계와 생활규칙을 함께 지킴 — '정당한 지도,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배움
---	---	--

적용: 초등 저학년부터 단계별·체험형 / 권리교육과 '상호존중' 교육을 한 세트 / '찾아가는 권리교육' 강사 양성 체계 활용 / 3R을 브랜드로 하여 수원형 아동보호교육 특화

제안4 [예방·발굴] :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 추진

- ADHD와 경계성지능아동은 높은 양육강도 및 보호자 본인 (유사)장애로 아동학대와 재학대로 이어지고, 건수가 증가함
- 경계선지능아동은 **일반 사례와 다른 지시적·장기적 개입**이 필요하나, 현재 아보전 예산·인력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2025.11월 수원시 경계성지능아동 지원에 대한 조례 신설과 연동하여, 예방→발굴→선별→전문관리의 지원체계를 제안함

① 예방적 예산 배분 지원기관 예산 확보·배분

대상: 드림스타트·지역아동센터 등 일선 지원기관

- 장애 미등록 아동도 지원받도록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선별검사비 지원
- 인지·학습 프로그램 및 양육코칭 운영비

→ 학대 이전 단계의 사각지대 해소

② 전용 인프라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센터 설치

대상: 학대 여부 무관, 지역 내 경계선지능아동 전반

- 인지·학습 지원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상시 운영
- 조기 발견·진단 및 심리·정서 지원 원스톱
- 전문가 양성·가족 상담을 아우르는 전용 거점
- 행동중재전문가 상시 근무(지시적, 훈련적 개입)

→ 경계성지능아동 상시 지원 거점

③ 사후 전문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역량 강화

대상: 학대 판단된 사례 중 경계선지능아동

- 경계선지능 전용 심리치료비 편성 (현재는 일반사업비에서 충당)
- 장기·집중 개입이 가능한 전담인력 배치
- 현재 12회기는 부족해, 장기 회기 치료 확보

→ 일반사례 검토 해소, 특수사례 전문성 축적

참고 — 충남 부여군(‘24.11.13. 조례) 인지·학습 지원·맞춤형 교육프로그램·조기발견/진단(1차 선별검사 + 진단검사비 지원)의 단계적 체계 운영

자료: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조례(‘25.11)/수원특례시 데이터포털(‘25.8월말)/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지능분포(Q71~84, 13.59%—추정 약 2.3만 명)/집단심층면접(FGI, 2026.6.2)/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조례(‘24.11.13).

제안5 [신고·조사] : 수원형 정서학대 ‘판단기준’ 마련

-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례를 모아 3주체가 합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운영형 기준

왜 필요한가 — 판단이 모호한 ‘다수 발생 사례’

- 정의 확대+자동 통보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정의 확대와 가정폭력 노출 자동 통보로 ‘판단 모호 사례’ 급증
- 개인별 편차 같은 사안도 출동·접수 담당자마다 ‘학대/훈육’ 판단이 갈림 — 경찰·지자체 간 수준 불일치(FGI)
- 3주체 부담 경찰 과중·지자체 재신고 폭증·아보전 장기 사례관리로 연결

우선 합의 대상 — 현장 다수 발생 사례 유형

1. **부부싸움·가정폭력 노출**
신고의 70~75%가 부부싸움 관련(전담공무원) — 노출 시 자동 학대 판단의 적정성
2. **경계선지능·ADHD 훈육 갈등**
교정이 어려워 갈등·재신고 반복 — 아동 특성과 보호자 한계를 함께 보는 기준
3. **등교거부·귀가지도 갈등**
‘학교 가라’ ‘일찍 와라’ 지도가 신고로 — 정당한 지도와 정서학대의 경계
4. **일상 잔소리·큰소리**
‘손 씻어라’ 등 생활지도 큰소리 — 훈육과 정서학대의 구분 기준

어떻게 — 합의·갱신 4단계 순환 체계

- ① **사례 수집** 공동대응(위더스) 회의에서 판단이 갈린 정서학대 사례를 분기별로 모음
- ② **기준 합의** 경찰·전담공무원·아보전이 ‘학대/정당한 지도’ 판단선을 사례 기반으로 합의
- ③ **가이드 배포·교육** 합의 기준을 수원형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문서화 — 현장·신규자 교육에 반영(파출소 등 안내)
- ④ **점검·갱신** 적용 결과·신고 유형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기준을 보완·갱신(순환)

합의 기준 틀 (정서학대 6개 행동범주)

자극 및 상호작용 차단 / 무시·거부 / 겹주기 / 모멸감 주기 / 위협 노출 / 무리한 기대 강요 — 각 범주별로 ‘다수 사례’의 학대 인정선을 합의·명문화

핵심 기준의 ‘완성’이 아니라 ‘운영’ — 다수 발생 사례를 두고 3주체가 합의·갱신을 반복함으로써 판단 편차와 부담을 함께 줄임

정서학대의 궁극적인 문제는 법률 유형화 부재이며, 아동복지법 개정 과제임

현행 아동복지법은 정서학대를 포괄·추상적으로만 규정 → 법원 판례와 아동권리보장원 지침이 판단을 매우는 구조임

① 아동복지법 (법률)	② 법원 (판례)	③ 아동권리보장원 (실무지침)
· 제17조5호: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포괄·추상 규정 ·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 그 외 유형 열거 없음 → '무엇이 학대인가'를 법이 특정하지 않음	· 대법원 2015도13488 등: 관계·태도·연령·반복성·지속시간·결과 등 종합 고려 · 교사 훈육도 정도 넘으면 정서학대(대법원2024.9.12. 선고 2020도12920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 → 사회상규 위배 여부로 정서학대 판단	· 신고·판단 실무 위한 행동유형·예시로 보완 (2024) · 법률의 공백을 지침이 메우나, 법적 구속력·일관성은 제한적

비교 — 노인복지법은 '법률에 유형'을 두고 있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 신체·정서·성·경제·방임·유기 등 학대 유형을 조문에 항목별로 열거하고, 정서적 학대(제6호: 폭언·협박·위협 등)를 명시.
→ 아동복지법 대비 '무엇이 학대인가'가 법률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구체적

궁극 과제 —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규정의 '유형화·구체화' 개정

- 정서학대 '행동 유형'을 법률(또는 시행령)에 유형화 — 노인복지법 방식 참고, 예측가능성 제고
- 법원 판례·아동권리보장원 지침의 축적된 판단요소를 법령 기준으로 상향·정합화하는 것임
- 아울러, '정당한 훈육/지도'와 '정서학대'의 경계 기준을 명문화 필요 → 현장 판단 편차·소진 완화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5호·제3조7호, 대법원 2015도13488·2020도12920, 헌재 2024헌바183,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등

정서학대 판단의 참고 틀 — 6개 행동범주·21개 하위기준, 황옥경 외(2021)

황옥경, 박지민, 구은미, 송미령(2021),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동 범주 및 하위 행동 타당성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70(2), pp. 101-132.

① 자극 및 상호작용 차단하기	② 무시 / 거부하기
제한 아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음 감금 화장실·배란다·지하실 등에 혼자 남겨두거나 격리 발달지극 차단 활동·도래관계 형성 등 발달에 필요한 자극 기회 차단	기본욕구 무시 정당한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고의로 무시 상호작용 거부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시도에 면박·거부 존재 거부 생물학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양육 회피 정서적 부재 약물·음주·정신적 문제 등으로 감정을 공감하지 않고 하찮게 여김 비일관된 반응 기분에 따라 변덕스럽게 다르게 반응
③ 겁주기	④ 모멸감 주기
위협 물건을 부수거나 위협한 도구·말로 공포 분위기 조성 언어폭력 큰소리·욕설·폭언을 퍼부음 유도 한쪽 부모 편으로 끌어들이 특정 의견·행동을 유도	수치심 주기 아동을 비하하거나 조롱함 굴욕감 주기 사람들 앞에서 혼내거나 창피하게 만들 하찮게 여기기 역량을 의심·불인정, 낙인 호칭 사용 따돌리기 가정 내에서 아동을 따돌림
⑤ 위험상황 노출	⑥ 능력 이상의 무리한 기대·강요
가정폭력 노출 가정폭력·학대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 부적절한 위탁 알면서도 부적절한 양육자에게 맡김 타락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 건강한 사회경험 차단	성취 강요 능력을 훨씬 넘는 성취에 극도의 압력 (예: 과도한 사교육) 비교 발달능력·개인차 무시, 형제·친구와 비교 착취 양육자 욕구 충족 위해 이용, 역할을 뒤바꿈

활용 포인트 법원·아동권리보장원 기준의 추상성을 보완하는 '판단 요소 체크 틀' — 특히 ⑥ 무리한 기대·강요는 과도한 사교육 등 새로운 유형의 정서학대 판단에 유용

제안6 [신고·조사] :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With Us) 2.0으로 재구조화

- 수원시 공동대응센터(With Us)는 경기 최초 설치·주2회 사례판단으로 대표적인 성과. 단, 고정 기관 참여로 형식화 우려
- 아동학대 사례 특성에 맞춰 전문가가 유연하게 참여하는 ‘2.0 운영’으로 고도화 필요

근거 - 현장

- [수원시 공동대응센터 (With Us, 경기도 공동대응 운영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구성: 지자체·교육지원청·4개 경찰서·아보전 등 총 47명
 - 활동: 주2회 사례판단(통합사례회의)·정보공유 정착
 - 공동대응센터는 주요 3개 기관의 안정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
 - "민관 관계를 수평화하고 정보·경찰망을 통합한 우수 체계"로 평가할 수 있음
- [긍정평가, FGI]
 - 참여기관 관계의 수평화 (특히, 민간의 심리적 부담 완화)
 - 관계 공식화로 인해 위축감,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
 - 정보 공유 (민간: 가정 히스토리, 경찰: 내부망 연계), 경찰 필수 참석 등
- [보완평가, FGI]
 - 사례판단 회의에 집중 운영이며, 고정된 기관 참여로 다양한 의견 수용성 ↓
 - 사례판단 이후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단계의 솔루션 회의 기능이 부재함
 - 정신건강(조현병 등) 사례가 고난이도이나, 사례판단회의에서 병력파악, 의료기관 참여 곤란
 - 신규 인력의 경우, 위드어스와 정보연계협의체(월 1회) 혼동 발생

자료: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조사(2026)·질적면담(FGI, 종합)

제안

- 위드어스 솔루션 자문위원 풀(pool) 구성
 - 분야별 전문가 사전 위촉: 정신과의사, 임상심리, 법률 등 (연락체계 상시 확보)
 - 자문위원은 필요한 사례에 배석하거나, 사전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함
- 개별 사례별 맞춤 참여(고정적 운영→가변형 운영)
 - 고정 참석 방식은 운영의 형식화, 참여 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개별 사례에 맞춰 참여 주제를 '맞춤형 참여' 도입 제안
 - 정신건강 사례엔 정신과 의사, 장기보호·원가정 복귀 사례엔 사례관 전담요원, 학교 연계 사례엔 교육지원청 등 사안별로 핵심 주체만 결합하는 방식 운영
- 유연한 운영 방안 (수시 소집: 심화사례 한정)
 - 정례(주 2회) 외에, 긴급 분리·고위험 재신고·판단 곤란 사례는 수시 소집 가능
 - 사례관리 과정에서 아보전이 안전을 직접 상정해 공동 논의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판단 중심'에서 '판단+관리 지원' 체계로 기능 확장 요구
- 운영 지속성 확보
 - 인사이동이 잦은 공공 특성상, 신규자 OT 및 가이드라인 정비로 운영 노하우 단절 방지

제안7 [분리·보호] : 분리·보호 인프라 확충 (특히, 장애 아동)

- 분리조치 비중은 확대(재학대 분리 8.0%→33.3%)되나, 장애아동은 특성에 맞는 시설 부재로 '떠돌이 이동'
- 현재 아동학대팀 단독 전담 구조의 한계 → 장애인복지와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

근거 — 데이터·현장

- [실태]
 - 재학대 분리보호 8.0%(‘24)→33.3%(‘25), 분리조치 비중 확대 추세
- [FGI]
 - 분리해도 보호처 부재: 일반 쉼터→장애 쉼터→중장기시설로 떠돌이 이동·자리 날 때까지 대기하는 경우가 많음
- [FGI]
 - 장애아동은 학대의 '표적'이나 보호 부담에 관내 시설 TO가 있어도 기피 → 전국 공문·원거리(경상도) 전원까지 실시함
 - 경계선·ADHD 급증·부모도 경계선 다수, 지시·훈련형 접근 필요하나 전용 치료비·예산 공백
- [FGI]
 - 현 구조는 분리·보호를 아동학대팀이 단독 전담 → 장애 영역 전문성·시설자원 접근 한계

자료: 수원시민 아동학대 인식조사(2026)·질적면담(FGI, 2026.6)

제안

- 학대피해 장애아동 장기쉼터 직영 검토·위탁가정 풀 확대
 - '대기 없는' 아동 중심 배치
- 장애·경계성 장애 아동 전용 보호처 확대 또는 확보
 - 전용시설 신설 또는 기존 시설 내 전용 쿼터 확보
 - 원거리 전원 방지(사례: 노원구 영유아쉼터)
- 장애인복지와 협력의 의무화
 - 아동학대 피해아동 입소 연계 책임, 성인시설 내 장애아동 보호 병행 운영 검토 등

5. 수원형 아동보호체계 9가지 제안

41

제안8 [회복·기반] : 아동학대의심 가정회복지원 전담조직 신설 (가칭)수원시아동행복올타리

- 아동학대 판단 전, 가정을 지원하며 학대를 예방하는 가정방문 회복지원·조기개입 등 기존 체계를 넘는 조치가 최근 도입해 운영중
- 현재는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전담하는 전담팀 신설 또는 별도 센터 설치 방안 검토 필요

근거 — 데이터·현장	제안
• [실태] - 조기지원 대상 15→56건(3.7배), 서비스 28→230회(8.2배) : 1년 새 급증 • [실태]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연 1,300~1,500건 - 사례 1건당 최소 9개월 관리, 50%이상 종결 없이 누적되고 있음 • [FGI] - 아동보호전문기관 예방응호팀이 사례관리와 예방활동에 더하여, '조기개입+일반사례 관리'까지 맡아 본연 업무 부담 • [제도] - 2025.9 조례에 위기사동 조기지원(학대 판단 전) 근거 신설 ※ 현재는 복지부 시범사업이나, 종료되더라도 수원시는 자체 유지하겠다는 입장임	• (A안) 수원시아동행복올타리 지원센터 도입 - 학대 미판단 가정 선제 개입 - 피해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가정에 방문하여 관련 지원 실시 - 조기개입 등 지원이 도입되지 얼마되지 않아, 모니터링 및 평가 후 검토 필요 • (B안)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아동행복올타리지원팀 신설 - 별도 기관 설치없이 내부 팀 신설로 조기개입, 가정방문 회복지원에 대한 집중 지원

자료: 수원시민 아동학대 인식조사(2026)·질적면담(FGI, 2026.6)

5. 수원형 아동보호체계 9가지 제안

42

제안9 [회복·기반] : 아동보호체계 지속가능성은 결국 사람에서 나옴 (인력충원, 처우개선)

- 전담공무원 1인당 109건/년(복지부 권고 50건의 2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 47건 담당
- 인력 확충과 함께 '체감되는' 금전·비금전 처우개선 병행 + 권역화로 '관리 총량' 자체를 줄이는 구조 개편 필요

근거 — 데이터·현장	제안
• [전담공무원] 지속 충원하였어도, 보건복지부 권고치(50건) 초과 - 11명('21)→14명('26), 1인당 74건/년 (3년 의심사례평균 1,067건) ※ 2025년 시군종합평가 시, 공무원 1인당 사례건수 70건 초과시 감점 • [상담원 업무량] 상담원 1인 47건(고위험은 주 1회 방문) - 과거 1인당 사례량 50~80건서 줄었으나 여전히 과중 • [아간상담·사례관리 기록] - 보호자·아동 일정상 밤 9시 상담 일상 - 전 과정 전산기록은 '살인적' 강도로 표현됨 • [보상 한계] - 초과근무 주15시간 상한·대체휴가는 사례 일정상 사실상 소진 불가 • [처우 체감 '0'] - 법인(굿네이버스) 호봉이 가이드라인보다 높아, 지자체 수당이 '조정수당'으로 상쇄→ 처우개선이 체감 안되는 실정 • [승진 정체] - 관장·팀장·상담원 구조: 5·7년차도 계속 '상담원', 소진·이직으로 이어짐	① 인력 확충 - 전담공무원을 1인당 보건복지부 권고치(50건) 수준으로 단계적 증원 지속 추진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증원 및 예방활동 전담 인력 충원 ② 처우개선 - 현재 처우개선에서 특수분야 복지사를 위한 '체감 보상' 설계 필요 - 예: 지역화폐, 복지포인트 제공, 연말 보상, 건강검진비 등 ③ 업무환경 개선 - 사례관리 업무량 조정, 자기점검 시간(굿타임 확대), 선임상담원제 도입, 급량비 현실화 등 ④ 장기적인 과제 - 장기적으로는 권역·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분화로 '관리 총량' 축소 고려 ※ 예: 전주(완산아보전, 덕진아보전) - 총인구수: 62만명 ※ 예: 수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수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조사 인력 현황(2026)·질적면담(FGI, 2026.6) 종합, 전주시청 홈페이지(2026)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살피고, 함께 보호하는
2026년 수원형 아동보호체계구축 정책토론회

토론자료

좌장 | 김경희 교수(가톨릭꽃동네대학교)

①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의 현재와 고도화 과제

황원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원시 아동돌봄과)

② 경찰 입장에서 본 아동학대 공동대응 발전 방안

배명현 경장 (수원팔달경찰서)

③ 지역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현황과 과제

김수현 팀장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④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현석 관장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⑤ 특수육구 아동학대 사례관리 협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채은 팀장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토론문 ①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의 현재와 고도화 과제

황원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수원시 아동돌봄과)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2021년을 기점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과거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던 아동학대 조사는 지자체 전담조사 체계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공적 책임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수원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조례 개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원,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확대 등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 대응을 개별 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원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단순히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고 건수를 처리하는 단계를 넘어, 보다 정확하게 위험을 선별하고, 조기에 개입하며,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중심에 둔 체계로 고도화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아동보호팀은 휴직자 1명을 제외하고 실제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10명이 5개 조로 나뉘어 학대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 판단,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의 사례연계 등이며,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의 분리보호 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제에서 제시된 수원시 아동학대 실태를 보면, 아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2% 줄어든 반면, 연간 아동학대 신고는 2022년 1,017건에서 2025년 1,205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의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은 63.9%에서 4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도 주목해 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단순한 신고 처리 중심의 체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고는 증가하지만 학대 판단 비율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 비율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에 놓인 아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발견하고, 얼마나 일관되게 판단하며, 얼마나 적절하게 보호와 지원하고 있는가입니다.

특히 학대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서학대는 대응체계 고도화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학대는 신체학대와 달리 상처나 상흔처럼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이를 양육 가치관의 차이 또는 단순 훈육의 문제로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동의 피해 역시 위축, 불안, 공격성, 또래 관계 변화, 학교생활의 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피해 양상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서학대 여부를 아동 면담이나 보호자 진술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서학대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자료, 상담 기록, 의료·심리평가, 주변인 진술, 과거 신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 목적에 한정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은 아동보호라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 접근권한과 관리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는 지자체의 단독적인 판단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지역 4개 경찰서의 APO,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조사를 담당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가 함께 사례 판단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공동대응센터는 다기관 협업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입니다. 특히 단순히 아동학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계획, 조기지원까지 함께 논의한다는 점은 수원시 대응체계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가 동일한 사례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지자체 단독 판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보호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동대응센터의 기능이 확대될수록 그 운영 역시 한 단계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판단 기준의 표준화, 아동 의사 반영 절차의 명확화, 재판단 과정의 균형성 확보, 일반사례 조기지원의 내실화 등을 통해 공동대응센터가 보다 아동 중심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발전해야 합니다.

공동대응센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된 일반사례에 대해서도 학대예방을 위한 조기지원 필요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이 하락하면서 일반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대 아님”으로 종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의 보호자와 아동의 특성, 가정 내 위험요인, 과거 신고 이력,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재신고와 재학대 가능성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사례에 대한 조기지원은 앞으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핵심 요소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일반사례를 동일하게 관리하기보다는 위험요인에 따라 개입 수준을 구분하고, 반복 신고 이력,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가정폭력 동반 여부, 아동의 연령과 장애 여부, 학교 부적응 등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자 선별 체계가 필요합니다.

공동대응센터는 일시보호 중인 아동의 원가정복귀 여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정환경조사, 보호자의 양육계획, 보호자와 아동의 교육·상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가정복귀는 가족 재결합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재학대 위험을 동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동의 가정복귀가 보호자의 신청, 관련 행정절차, 복귀 결정의 순서로 진행되면서 복귀 과정이 보호자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정복귀 결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보호자의 희망이나 행정절차의 충족 여부가 아니라 아동의 안전과 최선의 이익입니다. 따라서 원가정복귀 절차는 아동의 의사를 충분히 청취하고, 아동의 안전을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동대응센터는 학대행위자가 학대판단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재판단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절차가 학대행위자의 방어권 보장에만 치우치는 듯한 한계도 나타납니다. 행위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아동에게 추가적인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아동에게 반복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의견제출 절차가 실질적으로는 행위자의 주장만 추가로 반영되는 구조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의 의견제출권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단 과정에서는 아동의 추가 진술을 최소화하고, 기존 조사자료, 학교·의료·상담 기록, 주변인 진술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불복과 새로운 증거 제출을 구분하고, 재판단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기준도 필요합니다.

결국 지자체 아동학대 대응의 성패는 신고를 얼마나 많이 처리했는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에 놓인 아동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며,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제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더 많이 조사하는 체계”에서 “더 정확하게 선별하고, 더 조기에 발견하며, 더 섬세하게 판단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신고 건수 증가와 판단 비율 하락이라는 변화 속에서 조사자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화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정서학대처럼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과소 판단되지 않도록 판단의 질과 일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원시 아동보호팀은 판단을 자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판단의 정확성, 판단 기준의 일관성, 아동 중심 보호계획의 실효성, 일반사례 조기지원 사업의 내실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지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아동학대 대응이 신고 이후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 보호, 회복으로 이어지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문 ②

경찰 입장에서 본 아동학대 공동대응 발전 방안

배명현 경장(수원팔달경찰서)

먼저 앞서 발제 자료를 통해서도 이야기해주셨다시피 수원시는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시·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이 공동으로 주 2회 사례판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어느 시·군보다도 공동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체 경찰관에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겠으나 아동학대 담당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공동대응이 발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추가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3가지 정도로 내용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의 최소화입니다.

아동학대 공동대응 방식 중 숨어있는 아동학대 사례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점검 방식 및 조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하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 예비소집·미취학·장기 결석 아동 합동점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만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등이 있는데 모든 점검들이 다 필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피해아동들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점검 방식들은 추가되고 있으나 인력은 그대로인 상태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점검을 진행하는 담당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이는 꼼꼼하게 사례를 파악하는데 있어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들이 추가로 생겨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의 연속성입니다.

앞서 발제문에서 명시되었던 것처럼 각 경찰서별 아동학대 담당경찰관은 보통 1명에서 많아도 2명이 고 이마저도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팔달경찰서를 예시로 보면 아동학대 담당경찰관은 저 1명이며 노인학대, 가정폭력 업무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의 인력구성 및 사건 수 등을 비롯하면 현재 인력구성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각 경찰서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부분 빠르면 6개월 길어도 1~2년이면 업무가 변경됩니다. 1년에 인사이동이 크게 2번 있는데 이때 많은 인원 변동이 생기면서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인사 시즌마다 변동이 있겠으나 경찰서는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인원수가 적어 인사이동의 여파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어느 정도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공동대응을 함에 있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관기관 간 시스템 통합입니다.

공동대응 방안으로 시스템 통합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시스템 상의 문제, 개인정보문제, 막대한 예산 문제 등으로 현실화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통합이 된다면 아주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어 추가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SAN이라는 사회적약자 보호 종합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이를 통해 관계성범죄(아동·노인·장애인학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학교폭력, 안전조치 이력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시스템이 유관기관 간 통합된다면 시청 아동보호팀에서 가정방문 조사전 해당 가정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에 대한 이력을 미리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면밀한 조사가 가능할 것이고 경찰관도 조사 및 상담 내용 등을 확인하여 해당 가정의 안전조치 및 임시조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더 깊게 파악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③

지역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현황과 과제

김수현 팀장(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I 서론

아동학대는 더 이상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기존의 신고·조사 중심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 회복지원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한 위기아동 발굴, 긍정양육 문화 확산, 지역사회 중심 보호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또한 아동권리 기반 예방사업 확대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 예방이 특정 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을 의미한다.

수원특례시는 인구 약 120만 명 규모의 대도시로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2022년 경기도 최초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수원시, 교육지원청,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학대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아동권리 증진과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으로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며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기존 아동학대 사례관리 뿐 만 아니라 예방과 권리옹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예방옹호팀을 신설하였으며, 예방부터 회복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해오고 있다. 이에 본 토론에서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1차·2차 예방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수원형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II 현황 및 실태분석

1. 수원시 아동보호체계 현황

수원시는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지자체, 경찰, 교육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공동대응센터 운영,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학대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예방과 조기개입 중심으로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간 약 1,300건 규모의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31,348건의 전문서비스와 심리검사 198건, 심리치료 2,486건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관리는 매년 지속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누적되고 있어 사례관리 수요와 업무 부담이 지속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아동보호 수요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존 사례관리와 회복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학대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예방옹호팀을 중심으로 예방교육, 아동권리옹호, 시민참여 캠페인, 조기지원사업 등을 확대하며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 예방에서 회복까지 이어지는 아동보호체계 운영

가. 1차예방 : 일반아동 및 시민대상 예방사업

1차 예방은 아동학대 발생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보편적 예방사업으로, 지역사회 전반의 아동권리 인식 향상과 아동학대 예방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찾아가는 상호존중 권리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시민참여 캠페인, AI 아동권리교육 등을 운영하며 아동과 시민이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동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권리 캠페인, 정책제언 활동, 아동권리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며 아동의 참여권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상호존중 권리교육은 교사와 아동, 보호자와 아동, 아동과 아동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아동이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까지 함께 존중하고 옹호하는 권리감수성과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며, 캠페인과 시민참여 활동은 아동학대를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예방교육과 캠페인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인식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향후 보호자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중심의 상시적 예방활동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나. 2차 예방 : 위기가정 조기개입 사업

최근 아동학대 정책은 학대 발생 이후 대응보다 학대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예방적 개입으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가족갈등, 아동의 발달 및 정서·행동 문제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가진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향후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심리치료, 후원연계,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제공하는 조기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조기지원 대상 가정이 전년 15명에서 56명으로 약 3.7배 증가하였고, 제공 서비스도 28회에서 230회로 약 8배 확대되는 등 학대 판단 이전 단계의 지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장에서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향후 안정적인 공공예산과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조기개입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ADHD, 경계선지능, 장애아동 등 발달적 특성과 양육 부담이 함께 나타나는 가정은 아동학대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III 정책제언

1. 권역별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수원시는 약 120만 명이 거주하는 특례시로, 4개 구의 아동 인구 규모와 생활권 특성이 서로 다르다. 2025년 기준 영통구의 아동 인구는 약 6만 명인 반면, 팔달구는 약 2만 명 수준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며, 권선구와 영통구는 피해아동 판단 건수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방식의 대응체계보다는 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아동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원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으나, 예방사업 확대와 사례관리의 지속적인 증가, 위기가정 조기지원 수요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기관 신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소 또는 권역센터를 우선 설치하여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방사업과 사례관리, 위기가정 조기지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위기가정 조기개입 예산 확대 및 전담인력 확보

현재 아동보호체계는 학대 발생 이후의 대응과 피해아동 보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많은 가정은 학대로 판단되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경제적 어려움,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아동의 발달 및 정서 문제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위기가정에 대한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연간 1,2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약 630만 원 규모의 민간 후원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대 발생 이전 단계의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는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선도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현장의 지원 수요는 현재의 공적 지원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기관에서는 연간 약 1억 원 이상의 민간 후원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심리치료, 생계지원, 양육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적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증가하는 예방적 지원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현재 조기개입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인 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기개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조례 제정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 없이 예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기개입 사업을 일회성 또는 시범사업이 아닌 아동보호체계의 필수 기능으로 정착 시키고, 안정적인 공공재원 확보와 함께 위기가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전용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대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학대 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아동과 가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가칭) 수원시 아동행복울타리지원센터

수원형 아동보호체계의 완성을 위해서는 학대 발생 이후 대응뿐 아니라 학대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예방 중심의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동학대예방, 아동권리옹호, 조기개입 및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가칭) 「수원시 아동행복울타리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한다.

아동행복울타리지원센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다. 특히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 아동, ADHD 및 장애아동,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 부담이 높은 가정, 경제적·사회적 위기가정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가진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대 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가족의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대상은 현재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더라도 발달 특성,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 학대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적 개입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행복울타리지원센터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예방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는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아동권리교육 및 상호존중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긍정양육 교육 ▲시민참여 및 아동권리옹호 캠페인 ▲위기가정 발굴 및 조기지원 ▲심리·정서 지원 ▲부모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학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행복울타리지원센터는 아동과 가족을 학대 발생 이전 단계부터 보호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예방 중심의 수원형 아동보호체계를 구현하는 핵심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수원시는 그동안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를 기반으로 피해아동 보호와 사례관리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왔다. 이제는 학대 발생 이후 대응을 넘어, 학대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로 정책의 중심축을 확대해 나갈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내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과 위기가정 조기지원 기능 강화, (가칭) 아동행복울타리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예방 및 권리옹호 기능 확대와 함께,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과 상호존중 교육, 긍정양육 교육 등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수원형 긍정양육 교육 패키지」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아동학대예방교육, 긍정양육교육, 상호존중교육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원 시민들에게 지역화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연계한다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긍정양육 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아동, ADHD 및 장애아동,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아동학대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완화하고 가족의 양육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학대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아동과 가정을 보호하는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수원형 아동보호체계는 피해아동 보호 중심을 넘어 예방-조기개입 및 지원-회복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사회 기반 보호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경찰, 의료기관, 복지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함께 살피고 함께 보호하는 수원형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권리 증진과 긍정양육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수원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문 ④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현석 관장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026년 수원형 아동보호체계 구축 정책토론회

장애아동 보호관점의
수원형 아동보호체계 제언

"학대피해 장애아동 권리 옹호와 실질적 다기관 공동 협업의 제도화"

발표자: 정현석 관장 |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통계로 본 장애아동 학대 현황

18.6%

전체 장애인 학대판정 중 '아동' 비율

전체 장애인 학대 1,449건 중
장애아동 피해 270건 (2024 보건복지부 기준)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침묵의 위기



의사소통 및 표현의 명확한 장벽

피해 상황을 언어나 적절한 신호로 표현하기 힘들어 학대 사실을 외부에서 조기에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가해 보호자에 대한 극도의 의존성

생활 전반의 조력을 절대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학대 행위가 지속되더라도 신고가 차단됩니다.



발견 지연으로 인한 학대 장기화

외부 모니터링 체계가 촘촘히 작동하지 않는 한 일상적인 고통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은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의 역사적 의의

입법의 핵심 배경과 가치

장애훈련의 특수성 공식 인정

일반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장애아동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전문적 판단의 제도화

단순 행정 편의를 넘어, 장애아동 옹호기관의 전문 역량을 공적 의사결정에 강제로 편입시킨 혁신적 조치입니다.

* 2025.11.11 공포 (법률 제21108호) / 2026.05.12 시행

개정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5조 제1항 후단 신설 - 의견청취 의무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장애 인권옹호기관의 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전문인력 요건 충족

이상과 현실의 괴리 : 현장의 한계

역할의 기하급수적 확대

기존 '경찰 수사 후 사후 통보' 수준에서 탈피하여, 현재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현장 공동 동행, 사례 판단 참여 요청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물리적 현장 인력 자원의 부족

법적으로 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은 비약적으로 가중되었으나, 실제 업무를 현장에서 감당할 직원의 정원 확충은 전무하여 업무 마비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사법기관과의 동행 체계 한계

실시간 긴급 경찰 출동 및 상시 조사 동행 요구는 전문인력의 휴식권 유실과 피로 심화로 이어져 질 높은 옹호 서비스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 협력 체계의 고도화를 지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프라 보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장애아동 학대 피해의 고통 가중 요인



보편적 지원의 한계

모든 아동이 직면하는 장벽

학대 상황에서의 독자적 의사결정 결여, 피해 사실 소명의 고난, 원가정 복귀 여부에 대한 보호체계 공백, 단기 주거 지원의 절대적 불안정성은 공통의 중대 문제입니다.



장애아동의 다중적 위험

특수성이 부르는 취약성 증폭

발달·인지 장애로 인한 왜곡된 의사소통, 피해 심터 내 전문 돌봄 인력의 부재로 인한 '입소 기피', 장기 치료/복합적 특화 욕구 미충족 등 이중고를 겪습니다.



보호체계 작동의 사각지대

두 행정 영역의 연결 고리 부재

아동복지 체계(공무원, 아보전)와 장애인복지 체계(권익옹호기관)가 별개의 법령과 조직으로 분절되어 있어 정보 연계와 연속적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별 기관의 구조적 장벽과 소통 부재



사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협업 체계

학대 예방 및 공동 대응은 실무 담당 공무원이나 기관 조력자의 "개인적 의지와 열정"에 극도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자가 순환 보직 등으로 교체되는 즉시, 기존에 힘겹게 구축했던 밀착 협력의 노하우와 유기적 소통 고리가 즉각 와해되는 고질적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경직된 칸막이 행정과 정보 단절

각 기관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개별 조례 등 상이한 보고 계통과 경직된 개인 정보 보호 수칙에 묶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형식적인 문서 행정을 선행시키느라 피해를 당한 아동의 인권과 실시간 신변 보호라는 근본 목적이 뒤로 밀려나는 구조적 우선순위 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원형 장애아동 보호체계 4대 제언

1. 의사결정 정례화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With Us) 내에 장애아동 전문 분과를 수립하여 정보 불일치를 사전에 해소합니다.

2. 공동대응 프로토콜

경찰 동행 출동의 세부 가이드를 선제 구축하여 현장 실무자들 간의 불필요한 행정 소모와 마찰을 전면 예방합니다.

3. 자원 연계 의무화

장애인복지과 및 관내 보호시설과의 사전 협약을 강화하여 분리조치 시 기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쿼터를 공식 확보합니다.

4. 전담 인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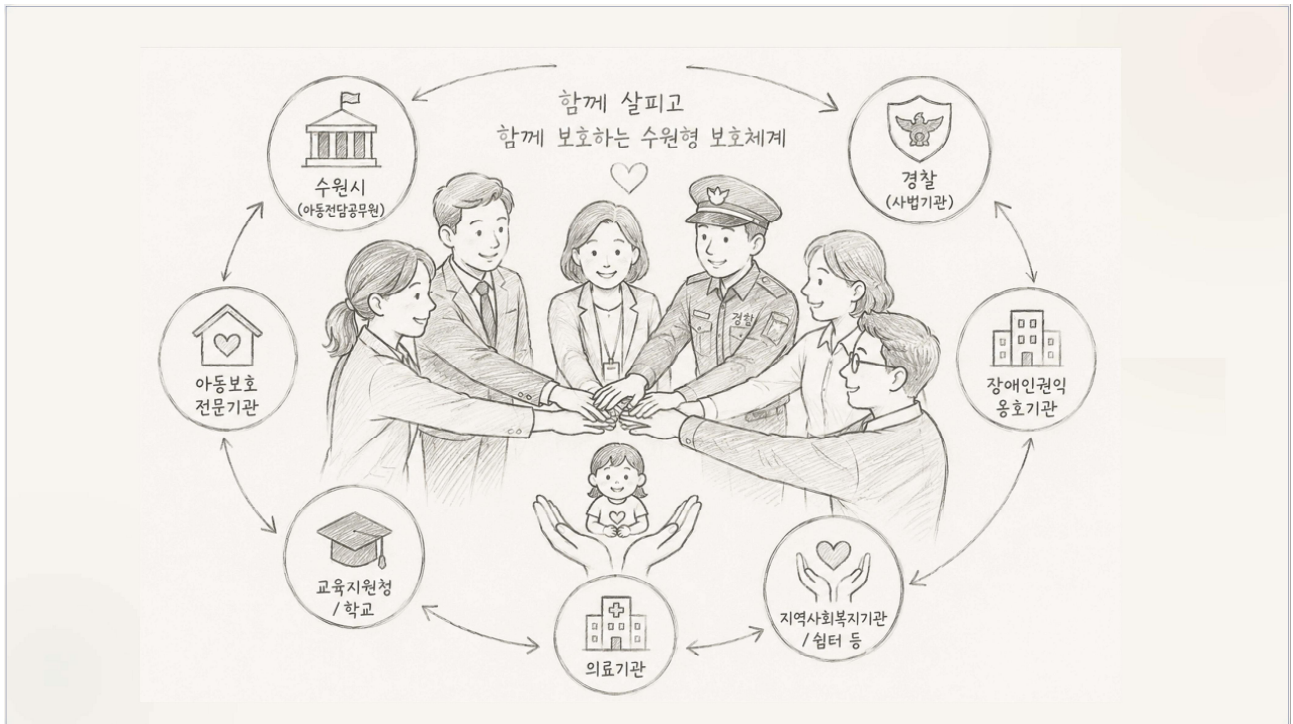
권익옹호기관 내 장애아동을 밀착 지원할 전담 인력 배치를 위한 시 차원의 실질적 특별 예산과 수당을 신설합니다.

"아동은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를 경험합니다"

절차와 형식을 넘어, 오직 아동의 안전과 최우선 이익만을 향해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자체 아동전담공무원, 아보전, 경찰과 함께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수원형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 온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문 ⑥

특수욕구 아동학대 사례관리 협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채은 팀장(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같은 가족을 바라보는 두 체계

오늘 발제를 들으며 가장 크게 공감했던 부분은 수원시에는 다양한 자원이 있음에도 역할 합의와 정보 공유가 부족해 자원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도 부모의 중독이 동반된 복합 사례가 발생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사례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동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현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부분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례가 종료되면 협력도 함께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는 한 가정을 두 체계가 각각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는 아이를 중심으로, 중독관리는 부모를 중심으로 지원하지만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대상은 같은 가족입니다. 이러한 협력의 필요성은 특히 부모의 중독이 동반된 복합 사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 중독과 아동보호, 서로 다른 시간

부모의 중독은 아동학대의 주요 위험요인입니다. 부모의 중독은 단순히 음주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 기능 저하, 정서적 방임, 가정폭력 노출 등 다양한 위험요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부모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개입했던 사례 중 하나입니다. 보호자가 어머니뿐인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중독 문제로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아동은 시설 입소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원가정으로 복귀시키기에는 어머니의 병식이 부족했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아동이 거주지 이전이나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돌봄 공백과 정서적 불안정, 중독의 대물림 가능성은 어쩌면 아이의 내면에도 그리고 사회적 비용으로도 고스란히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는 아동의 안전과 부모의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어느 하나만 우선하기 어려웠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중독은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성질환입니다. 변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아동보호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결국 아동보호는 시간을 다투고, 중독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바로 이 두 시간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술을 마시는 것과 중독은 100% 동의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독은 물질과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의 문제가 발생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 중독가정에서는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더 자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동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비일관된 양육을 보이고, 가정폭력에 노출시키거나 영아를 방임하는 사례도 현장에서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MASH(Multi-Agency Safeguarding Hub)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ASH의 목적은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관련 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MASH는 말 그대로 기존 자원을 연결하는 허브로 기능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함께 판단하고 서비스를 연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동료지원가, 정신과 병의원 등 협력에 필요한 자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동료지원가 등은 모두 공공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역시 협력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서로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함께 사례를 논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함께 만들어 갈 협력체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발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협력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체계여야 합니다. 저는 그 시스템 역시 신뢰와 소통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중심의 협력적 사례관리, 정기적인 사례회의, 각 기관의 역할 정리, 수시 정보 공유가 관계를 형성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발제에서 제시된 '피해아동·가족 맞춤형 회복지원 확대'가 필요정책 1순위로 제안된 점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회복지원은 아동만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 전체를 함께 바라볼 때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이 특정 담당자의 개인적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맺음말

우리는 아동보호 실천현장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관장을 포함한 9명의 인력이 120만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방과 조기 발견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학대가 발생한 뒤 아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 위험요인을 가진 부모의 중독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기관 간 협력은 한정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자 아동의 안전과 부모의 회복, 그리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특수육구 아동 사례는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서로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함께 사례를 논의하는 협력체계입니다.

아동은 어떤 기관이 개입했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충분히 보호받았는지를 기억합니다. 즉, 아동은 제도가 아니라 보호를 경험합니다. 그 보호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오늘 이 토론이 그러한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memo

memo

memo



함께 살피고, 함께 보호하는

2026년 수원형 아동보호체계구축 정책토론회

발행일 | 2026년 7월 10일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제작처 | 더조은프린트

함께 살피고, 함께 보호하는
2026년
수원형 아동보호체계구축
정책토론회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의 현재와 미래



수원특례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